종합감사

감 사 보 고 서

- 무안군 정기종합감사 -

2021. 12.

전라남도
JeollaNamdo
(감 사 관 실)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무안군의 조직·인사 운영, 주요재정사업 추진, 예산편성과 집행, 인·허가 처리실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

○ 행정사무의 적법성·타당성, 재정집행의 건전성·투명성 확보

2. 감사대상 및 범위

○ 무안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을 대상으로 **'18년 10월부터 '21년 7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중점

○ 국·도정 등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인사관리·조직운영, 인·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정성

○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와 예산낭비 사례, 소극행정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21. 8. 30.부터 9. 7.까지 감사인원 16명을 투입하여 감사 실시

Ⅱ. 감사결과

1. 처분요구사항 총괄

(단위 : 건/ 백만원)

총계 (가+나+다+라)	신분상 처분			행정상 처분(건)												모범사례 (다)	사전컨설팅 (라)
	합계 (가)	징계	훈계	합계 (나=A+B+C+D+E))	시 정							주의 (B)	개선 (C)	권고 (D)	통보 (E)		
					계 (A=a+b)	재정상 처분(건/백만원)					재정상 처분외 시정 (b)						
						소계 (a)	회수	추징	감액	기타							
43	12 (15명)	1 (2명)	11 (13명)	28	16 (374)	8 (374)	4 (171)	1 (23)	1 (10)	2 (170)	8	7	–	1	4	2	1

2. 주요 지적사항

1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한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문화체육과)은 '20. 7월부터 '22. 7월까지 **무안종합○○○○○ ○○** 연습장 **레슨**을 **목적**으로 **레슨프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

1. 기간제근로자 보수지급 부적정

○ 「무안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8조에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지급 기준**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도록 규정

○ 또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하여 **기본급**(일급×근무일수), **퇴직금**,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연차**수당** 등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음

- 그런데 위 군(문화체육과)은 '20. 7월부터 '21. 7월까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무안종합○○○○○ ○○**연습장 레슨프로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 **보수**는 **기본급**(일 00,000원) **외**에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도 않은** ○○ **레슨비**(1인당 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부적정**하게 **체결**한 후 **1,545만원**의 ○○**레슨비**를 **보수**로 **추가 지급**

* 월 레슨회원이 5명 이상이면 **2명**분은 **군 세입** 처리, **나머지**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지급**

○ 또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등에 **보수** 등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체육과)은 '20. 7월부터 '21. 7월까지 **무안종합○○○○○○○○**연습장 **레슨프로 기간제근로자**에게 **1,545만원**의 ○○**레슨비**를 **보수**로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음**

○ 그로 인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지급** 중이고 **소득세** 등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결과 초래

2. ○○레슨비 징수업무 처리 부적정

○ 「무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연습장 사용료는 **이용자**에 대하여 **정기회원권, 쿠폰회원권, 일일입장료**를 **징수하고, 시설물**에 대하여 **락카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체육과)은 '20. 7월부터 '21. 9. 7. 감사일 현재까지 ○○**연습장 이용자**로부터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레슨비**를 **부당**하게 **징수**

○ 또한 「무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수입금출납원**은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담당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체육과)은 징수업무 **권한이 없는 기간제근로자**가 **직접 ○○레슨비**를 **징수**하도록 회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 그로 인하여 **근거 없는 사용료**가 **징수**되고, **징수 권한이 없는 자**가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회계질서**가 **문란**해지는 **결과 초래**

> ☞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정·지급하고, ○○레슨비를 사용료로 징수할 시에는 관련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며, 징수 권한 있는자가 ○○레슨비를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

2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자치행정과)은 '18. 10월부터 '21. 7월까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제3항 등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결정**하되, 제출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

- 그런데 위 군(자치행정과)은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18. 하반기**('18. 12월)에 4명, **'19. 하반기**('20. 1월)에 2명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를 **부당**하게 **변경**

※ 다만 당시 대상자들이 승진소요연수 미충족으로 승진후보자명부에 미등재되어 있어, 근무성적평정 순위 변경이 승진에 불이익을 미치지는 않음

연번	평정 시기	평정 단위	대상자		근무성적평정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직렬	이름	평정단위별 순위	심의의결 결과		
						순위	점수	
1	2018년 하반기	재무과	○○6급	○○○	9	78	45.1	미등재자
2			○○6급	○○○	10	77	45.4	미등재자
3		망운면	○○6급	○○○	2	68	48.1	미등재자
4			○○6급	○○○	3	46	55.3	미등재자
1	2019년 하반기	사회 복지과	○○9급	○○○	4	12	61.9	미등재자
2			○○9급	○○○	5	11	62.2	미등재자

- 또한 **'18. 하반기**('18. 12월)에는 **지방○○9급** 근무성적평정대상자가 4명(수 1명, 우2명, 양 1명)이므로, 근무성적평정 **1순위**에게는 **근무성적평정점 70점**을 부여해야 하는데도 부당하게 **63.7점(-6.3점)**을 부여

연번	평정 시기	평정 단위	대상자		근무성적평정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직렬	이름	평정단위별 순위	심의의결 결과		부당부여 점수	
						순위	점수		
1	2018년 하반기	해양 수산과	○○9급	○○○	1	1	70	63.7	미등재자

※ 다만 대상자가 승진소요연수 미충족으로 승진후보자명부에 미등재되어 있어, 근무성적평정점 부당 부여가 승진에 불이익을 미치지는 않음

- 그로 인하여 정당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부여되지 않는 등 **근무성적 평정업무**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

☞ 앞으로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3 ○○○○위험지구 사업수행능력 평가업무 등 부당 추진

□ 위 군(안전총괄과)은 자연재해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지명경쟁)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거쳐 ㈜○○○○○○○과 계약체결(계약금액 9억 3,580만원, 사업기간 '21. 00. 00. ~ 00. 00.)

1.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서류 사실과 다르게 제출

○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지자체장은 **입찰서류**를 **거짓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입찰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 또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제9절에 해당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를 **허위 제출**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취소**하고,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총괄과)은 '20. 10월경 위 용역관련 ㈜○○○○○○○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평가를 하면서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을 **용역**에 **참여하지 않은** ○○○과 ○○○을 **허위**로 **제출**하였는데도 **계약 해제·해지 미이행**

구 분	허위 제출 내역		부 당 사 항
	당초	변 경	
분야별책임 기술자명단	△△△	○○○	당초 전차 용역에 참여 하지 않은 ○○○과 ○○○을 참여한 것처럼 허위 서류제출
	△△△	○○○	

- 그로 인하여 ㈜○○○○○○○**은 허위서류 제출**로 위 용역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대상**인데도 오히려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가점**(0.48점)을 받아 결국 **9억 3,580만원의 용역**을 **낙찰**받는 결과 초래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확인 및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발급 태만

○ 「낙찰자 결정기준」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과 확인요령에 **실적증명서 발급**은 **공사대장, 준공조서, 회계·계약서류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총괄과)은 ′20. 10월 경 위 용역관련 ㈜○○○○○○○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을 위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의 분야별 책임기술인 명단을 같은 해 00월에 받고서 00월에 변경되어 다시 확인을 요청하자

- **업무담당자**는 관련 준공조서 등 용역서류를 **검토**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 되었다면 발급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도 **태만히** 하여 도장날인하고 **발행**

3.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 선정 시 외부위원 제척 등 공정성 훼손

○ 행안부「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9조에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의 **심의**를 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은 외부전문가 및 발주청의 소속직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

○ 한편 전남도 및 타 시군은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평가위원**은 **평가당일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있음

- 그런데 위 군(안전총괄과)은 ′20. 10월경 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계획을 마련하여 군수결재를 받으면서 평가위원을 **외부위원**은 **제척**하고 **내부위원(과장1, 팀장 4)** 으로만 **위촉**하여 평가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

- 또한 평가위원을 평가당일 선정하지 않고 **10여일 전**에 **미리 선정**하여 군수결재를 받으면서 **협조자(10여명)**에 **공개**하여 **불공정한 평가** 초래

☞ ○○○○위험지구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팀장, 담당자** 등 **2명**에게 **"경징계요구", 담당과장**에게 **"훈계요구"**

☞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에 대하여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제재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4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세무회계과)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18년부터 '20년 기간에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추진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10조에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21조에 취득자가 취득세를 **미신고·미납부**하면 지자체장은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세무회계과)은 '18년부터 '20년 기간에 **신고·납부 누락** 및 **감면조건 위반**으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하는 **취득세 26건 2,274만원**을 **부과 누락**

- 그 결과 **지방세수**를 **누락**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운영에 부담 초래

(단위: 천원)

세 목	부과대상	건수	부과(추징) 대상세액
취 득 세 (도 세)	계	26	22,744
	승강기 취득세 부과 누락	4	6,740
	임시건축물 취득세 부과 누락	3	7,220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 누락	18	6,551
	지역특산품생산단지 취득세감면분 추징	1	2,233

☞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아 부과누락 되거나, 감면요건을 위반하여 추징대상이 된 취득세 2,274만원을 부과(추징)하도록 "**시정요구**"

5 세입세출외현금 세입관리 부적정

□ 위 군(세무회계과, 자치행정과)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회계관리 규칙」 제75조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개설·사용하고, 해당 계좌에서 **소속 직원**의 **건강보험**료를 **징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회계관리 규칙」 제77조 제4항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는 **보관금의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 세입**으로 처리토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세무회계과)은 **반환기간 5년**이 **경과**한 **보관금 등 18건, 7,961만원**을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에게 **반환청구 가능 사실 미통보** 및 해당 금원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방치**

○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에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업자(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자치행정과)은 건강보험료 징수 및 납부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인부담금**의 **환급금 8,559만원**('20. 12. 16. 기준 추정)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방치**

○ 그로 인하여 **환급금**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방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소홀**히 하고, 예산을 부당하게 **과다 집행**한 결과 초래

> ☞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서 반환기간이 경과한 7,961만원을 세입조치하고, 건강보험료 환급금 8,559만원을 반환조치하도록 **"시정요구"**

⑥ 차고지 및 유가보조금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건설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7월까지 **차고지 설치 신고서**를 접수 받아 **확인서**를 발급한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등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무소**가 있는 **시 · 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규정

○ 또한 차고지가 확보 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또는 감차 조치토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건설교통과)은 **총 5명**의 운송사업자가 **최소 42일**에서 **최대 975일(약 2년 8개월)**까지 차고지 설치기간이 도과 되었는데도 차고지 설치기간 **만료** 또는 **연장 안내** 및 **행정처분 미조치**

- 그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법령 취지**가 **훼손**되고 **차고지외 주차**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초래

□ 위 군(건설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7월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부정수급자를 조사·행정처분 등을 추진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2조 등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등 **10가지**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

○ 또한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이 **확인** 시 유가보조금 **환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조치토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건설교통과)은 '18년 10월부터 '21년 7월까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서 총 **283건, 약 1,797만원**의 **부정 수급 의심 거래** 내역이 있는데도 **사실관계 확인** 및 **행정처분 미조치**

- 그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가능하도록 방조함으로써 **보조금**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되는 등 **교통행정**의 **신뢰성 실추**

>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 위반사업자 및 부정수급 의심내역 사실 확인 후 행정처분하도록 **"시정요구"**

7 지연배상금 산정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세무회계과)은 **계약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10일 이상** 지연배상금을 부과한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업무 추진

1. 지연배상금 산정 부적정

○ 「지방계약법」 제30조 등에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에 **공사**는 **0.05%**, **용역**은 **0.13%**를 곱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

○ 또한 계약담당자는 기성검사 후 인수한 경우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인 경우**에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지연배상금**을 **산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세무회계과)은 '○○ ○○지구 ○○○○○ 설치공사'의 **기성금**, '○○○ ○○의 숲 조성사업 소방공사'의 **선급금**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공제한 후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총 **5건, 1,215만원**을 **과소 부과·징수**

2.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계약 집행기준」에 최근 **3개월** 이내 **계약 이행**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제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세무회계과 등 2개부서)은 계약상대자가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등의 사유로 **계약 체결**이 **제한**된 최근 **3개월** 이내 **계약 이행**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이 **부과된** ㈜○○건설 등 **2개 업체**와 **3건, 3,393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특혜** 우려 초래

> ☞ 지연배상금 업무 추진 시 과소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10일 이상 지연배상금을 부과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요구"**

8 사회보장급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주민생활과 등 3개 부서)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 「아동수당법」 등에 수급권자에게 **미지급**된 **급여**는 **소급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경우는 **환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사회복지과, 주민생활과, 건축과)은 「아동수당법」 등 6개 법령에 따라 지원된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수급권자 관리 소홀로 **65명**에게 **1,263만원 과소**, **18명**에게 **979만원 과다** 지급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등에 긴급의료비지원 금액 중 **비급여 진료비**가 **150만원 이상**('20. 7. 31. 200만원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사회복지과)은 '18. 10월부터 '21. 7월까지 **150만원 이상 비급여 진료비**가 청구된 **19건 4,317만원**에 대하여 **부당청구 여부**를 **미확인**

○ 그 결과 수급자에 대한 **형평성**을 **훼손**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우려를 초래

> ☞ 과소 지급 65명에 대하여 1,263만원 추가 지급 및 과다 지급 18명에 대하여 979만원 회수하고, 향후 긴급의료비 부당청구 확인을 이행하도록 **"시정요구"**

9 무안군○○회 보조금에 대한 관리 · 감독 부적정

□ 위 군(문화체육과)은 전문체육 활성화 및 선수육성, 건전한 여가선용, 체력증진 등을 위해 '18년부터 '21년까지 ○○**회**에 **운영비 4억 7,260만원**을 지원

○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등에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체육과)은 '18년부터 '20년까지 군 ○○회가 보조금 50**건, 3,437만원**을 ○○○ ○○휴가비 등으로 **목적 외 사용**하고 있는데도 정산보고서 등을 검토·시정하지 않고 **부당**하게 **정산 처리**

- 그 결과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초래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지자체의 회계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체육과)은 '18년부터 '21. 9. 7. 감사일 현재까지 **군 ○○회**에서 **회계관직 지정·운영**을 **하지 않고 재정보증보험**도 **미가입**한 채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데도 **지도·감독 소홀**

- 그 결과 회계관직을 지정받지 않은 자가 회계업무를 처리하여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회계 사고 발생 시 **재산상 손해 우려** 초래

☞ 보조금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前 담당과장 2명에게 "**훈계요구**"

☞ 목적 외 사용한 보조금 3,437만원은 회수하고 회계담당 직원은 재정보증 보험에 가입하도록 "**시정요구**"

⑩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선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 위 군(해양수산과)은 **수산업발전**과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추진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등에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신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경고 처분**과 **30일 이내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이행 여부**를 **감독**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해양수산과)은 **휴업신고** 없이 **1년 이상** 무조업한 ○○○**호 등 11척**에 대하여 '20. 2. 26. **경고 처분**하고 **30일 이내 시정**하도록 명령한 후 '21. 9. 7. 감사일 현재까지 **시정 이행 여부**를 **미확인**

- 그 결과 **연안어업 허가 관리**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

○ 「수산업법」 제91조 등에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해당 어업 외**의 **어업**을 한 어선은 **1차 위반 시 어업정지 60일**을 **처분**하되, 어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1일당 6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해양수산과)은 '20. 9. 18. 허가받은 어업 외의 어업을 한 ○○**1호** 어선에 대하여 **어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중 **하나만**을 **처분**하여야 하는데도 **어업정지 30일**과 **과징금 90만원**을 과도하게 **병과** 처분

허가사항	위반일자	선명	허가자	위반내용	행정처분(0000.00.00.)
연안통발 0000-00	2020. 00.00.	○○1호	○○○	허가받은 어업 외의 어업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	① 어업정지 30일 ② 과징금 90만원(1/2감경)

- 그 결과 위반 어선에 **재산상 손해**와 **행정**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

☞ 행정처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팀장에게 "**훈계요구**"
☞ 1차 경고 처분 한 무조업선박(11척)에 대하여 시정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시정요구**"

11 농업·기술지도분야 민간보조사업 등 추진 부적정

□ 위 군(농정과 등 3과)은 '18년부터 '21년까지 지역 농산물 **생산·유통·가공 경쟁력 강화**를 위해 40개 사업에 139억원 지원하여 **시설·장비** 구축

1. 농업 시설물 공사·기계장비 구입 계약 부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등에 보조사업자가 건설공사 2억·전문공사 1억·일반공사 8천만원 이하, 물품 2천만원 이상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계약 체결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농정과 등 3과)은 ○○**영농조합법인** 등 **4개 업체**가 HACCP시설 개보수 공사(1억 7,545만원) 등 **2억원 이하**의 **4개 공사**(4억 4,932만원)를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또한 ○○○○○○○○**연구소** 등 4개 **업체**가 에어포그 등 5종 구입(1억원) 등 **2천만원 이상**의 **4개 물품**(2억 5,640원)을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구매 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그리고 ㈜○○ 등 **4개 업체**가 ○○○○○ 다각화사업(14억 5,498만원) 등 **4개 사업**(34억 9,196만원)을 **나라장터**가 아닌 **민간전용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을 통하여 **계약**이 **체결**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그로 인하여 **동종 업체**의 **참여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등 **특정업체 특혜** 제공과 **부실 시공**의 우려 초래

2. 민간보조사업 등 사후관리 부적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농업용 시설물·기계장비** 등 **중요재산**이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합동점검을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농정과 등 3과)은 민간보조사업장 현장점검 시 **보유현황**만 **확인**하고 **사용 실적**에 대한 **결과 보고**는 하지 않고 있음

- 이에 ‘21. 9. 2. 감사 기간 중에 **2개 사업현장**을 확인한 결과 **양파 정식기, 고구마 삽식기 등** 농기계가 **사용한 실적**이 **낮거나 없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설치지원 사업 지침」에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비가림 시설**을 지원하고 **준공 이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목적에 사용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친환경농업과)은 ‘16년부터 ’21년까지 **82농가**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면서 **재배시기**(6~8월)에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도 **재배 시기가 아닌 기간***에 **현장**을 **확인**함

  * 사후관리 점검계획 통보일 : ’18년) ’18. 9. 18. ’19년) ’19. 9. 3. ’20년) ’20. 3. 11.

- 또한 **읍·면**에서 **재배 사진**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관리대장**에는 **이상없음**으로 관리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그로 인하여 보조금으로 지원된 시설·장비의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당초 보조금 지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3. 농업 시설물 공사 산업안전관리비 정산 소홀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공사현장 정리 인건비, 공사용 사다리 등 **사용불가 항목**으로 과다 집행된 금액을 **감액·반환 요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농정과, 친환경농업과)은 ‘19년부터 ‘20년까지 ○○○○○ 6차산업화 사업 등 **5개 사업** 시공업체가 **산업안전관리비** 증빙자료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1,298만원 부당 집행**하여 **예산낭비**를 초래

☞ 관련부서에 중요 재산 사후관리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부당 수령한 산업안전관리비 1,298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12 ○○○ ○○○○○위험 개선지구 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안전총괄과)은 '18.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읍과 ○○면 일원을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받은 후 사업비 66억원을 승인받아 추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보조사업 내용 변경 시 중앙관서의 장(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총괄과)은 당초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지반보강 **그라우팅(320공) 공사비 40억원**을 계획하였으나, **'19. 6월**에 **승인기관**과 **별도**의 **협의·승인 없이 그라우팅(350공) 공사비**를 **46억원**(증 6억원)으로 **임의변경**하여 ㈜○○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

- 또한 '20. 6월 설계용역을 추진하던 ㈜○○에서 ○○○○**지구 공사**를 위해 **그라우팅**을 **350공**에서 **760공**(증 410공)으로 공사비는 **46억원**에서 **90억 5,900만원**(증 44억 5,90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는데도

- **'20. 7월**에 **추가예산**에 대한 **승인기관**인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도 **없이 90억 5,900만원**으로 **공법선정**을 **추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신기술(특허)을 우선 적용하고, **「신기술·특허공법 기술 제안 공고문」**('20. 7월)에 심의위원회 평가 시 **총사업비 초과 시**는 **탈락**시키고 **공법명**을 **표기**할 경우 **감점(-5점)**한다고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총괄과)은 '20. 7월 10개 업체에서 제출한 **특허제안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여, 총사업비 초과**로 **결격사항**이 있고 **공법명 표기**로 인한 **감점사항**을 있는 부적격업체 ㈜○○○○○○을 적격자로 **선정**

- 또한 '20. 11월 2순위 업체인 라이프조경㈜의 이의신청에 따라 자체 **재검토한 결과** 실무자가 정성평가 계산 실수를 **뒤늦게 확인하고 '20. 12월 용역**을 **중단하고,** 1순위 업체인 ㈜성우지오텍에 **계약해지 의견 조회**

○ 그로 인하여 붕괴 위험지역을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시행한 "○○○ ○○○○위험 개선지구" 설계용역 **10개월째**('20. 12월 ~ '21. 9월) **지연**되어 **주민들**의 **불안한 생활**이 **지속**되고, 특허공법 선정과 관련한 **법률 분쟁**이 **예상**되는 결과 초래

☞ 사업예산 확보계획도 없이 설계 및 특허공법 선정 등 용역추진을 강행하고, 공법선정과 관련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주민들의 불안한 생활이 지속되게 한 **업무팀장**에게 "**훈계요구**"

☞ 현재 2순위 업체 ○○○○○㈜와 '21. 00. 00. 신기술·특허 사용을 협약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나, 앞으로 유사 사례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통보(시정완료)**"

13 연안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해양수산과)은 「연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20. 00. 00. 해수부장관이 고시한 ○○, ○○지구 등 **무안군 6개 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추진**

1. 연안정비사업 승인 절차 및 자연해안 관리목표 관리 부적정

○ 「연안관리법」 제25조에 시장·군수는 **연안정비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32조에는 자연해안의 특성, 환경적 가치, 생태계보호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해안 관리목표"를 설정·관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해양수산과)은 '19. 6월부터 '21. 8월까지 "○○지구" 등 **6건**의 사업에 대하여 해수부장관이 고시한 연안정비사업 **승인 지역**이 **아닌 지역**에 **주민들이 요구**한다는 사유로 **"자연해안 관리목표"**를 **검토하지도 않고 자연바닷가**를 **훼손**하면서 **마을안길 포장**을 **시행**

- 그로 인하여 승인기관 협의 시 검토되어야 할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적정성** 등이 **검토되지 못하여 12억 6,970만원**의 **사업비**가 **목적외**로 **사용**되었고, "자연해안 관리목표"를 통하여 관리되어야 할 **자연바닷가**가 **생태적 특성, 환경적 가치 등**의 **검토** 없이 **훼손**되는 결과 초래

2.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미실시 및 연안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공유수면법」 제8조 등에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해양수산과)은 '18. 10월부터 '21. 8월까지 시행한 "○○지구", "○○지구" 등 **4건**의 **공사**에서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을 **득하지 않았고**

- 피복석 및 사석투하 등 일부공사에 대하여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3,196만원**을 **감액 및 회수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

- 그로 인하여 **공유수면**의 **사용가능 여부**가 **검토되지 않았고**, **예산 절감방안 등**의 검토가 소홀하여 **3,196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

☞ 관련 법령 검토를 소홀히 하여 당초 목적과 다르게 승인받지 않은 지역에 사업을 설계변경하여 시행하고, 자연해안을 환경적 검토 없이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한 **업무담당팀장**에게 "**훈계요구**"

☞ 해당부서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대로 연안 정비사업 추진 및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3,196만원을 감액·회수하도록 "**시정요구**"

14 무안 ○○길 ○○○○공원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 위 군(관광과, 세무회계과)은 '18년에 **'무안 ○○길 ○○○○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9. 1월부터 '21. 6월까지 **조성공사***'를 추진

* ○○공원 2개소(면적 4,725㎡), ○○조형물 3개소 등/ 공사비 33억원

1. 사업장 품질관리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등에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20㎡ 이상의 시험실**을 **설치**하고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착공 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관광과)은 공사비가 33억원인 무안 ○○길 ○○○○공원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시험실**을 **미설치**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품질시험계획**도 **미승인**

- 그로 인해 **주요 자재**의 **품질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 **공사 품질**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결과 초래

2. 공사 착공전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미이행

○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등에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검토**하기 위하여 **공사비**가 **3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위원회의 **건설기술심의**를 받도록 규정

○ 또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공원 등의 **공간** **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전**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도록 규정

** 다중이용시설 중 여가 휴게를 위한 공원, 공장, 수변 산책로·탐방로 등

- 그런데 위 군(관광과)은 **공사비 33억원**의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담당자가 **업무연찬 부족**으로 **건설기술심의**와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 그로 인해 **설계도서**의 **적정성** 및 **공공조형물**에 대한 **문화·자연·환경과**의 **조화** 등을 심의할 **기회**를 **상실**

3. 설계변경 추진 부적정

○ 「전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4조 등에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심사**를 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관광과)은 공사비를 **33억원**에서 **40억원(증 21%)**으로 설계변경하면서 전남도에 **계약심사**를 **미이행**

- 그 결과 설계변경 **증감 금액** 및 추가되는 **신규 공정**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받지 못**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기회 상실**

4. 하도급 관리계획 이행관리 부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낙찰자 결정기준」에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리계획**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하수급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

○ 또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을 위해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을 **발주기관 승인 없이**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세무회계과)은 계약상대자((주)○○건설)가 '18. 5월 **당초 ○○○○○○(주)**에서 **㈜○○건설 외 1개** 업체로 **하도급 계약**을 **발주기관 승인 없이** 체결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그 결과 「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 이행관리 소홀**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공정성 훼손**

☞ 실시설계용역 수립 중 건설기술심의 및 공공디자인 심의 미이행한 **담당자**와 공사 품질관리 부적정, 설계변경 계약심사 미이행한 **담당자** 등 2명에게 **"훈계요구"**

3. 적극행정면책 처리사항

1 재난관리기금 집행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안전총괄과)은 ’05년부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운용**하고 재해 피해 발생시 **기금 집행 업무 추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는 **자연재난구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지원 대상 피해기준 5배를 초과하는 큰 피해 발생 시 **의무예치금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총괄과)은 자연재난구호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지 않고** ‘19. 7월 사용가능액 잔고가 부족하자 정기예금 관리중인 **의무예치액 2억원을** 군 금고에서 **계약해지하여** 임시 교량가설 **공사비로 사용**

※ 교량가설공사 : 지방하천 ○○천 노후교량에 통행제한(7톤)을 확인하지 못하고 진입한 28톤 레미콘차량에 의한 교량 붕괴 사고 발생되어 주민편의를 위해 긴급공사로 추진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1교 ○○○○ 설치공사는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 증대 사업**인점이 인정
- (적극행정) **재난사고**의 발빠르게 **대처**하여 **사업성과**를 **달성**한 점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4. 모범사례

1 남악신도시 유휴지를 활용한 "모두누리 숲" 및 "주차장" 조성

남악신도시 **유휴 토지**를 활용하여 **명상·치유·경관**을 즐길 수 있는 **"모두누리 숲"** 및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삶의 만족도 제고**

- 남악신도시('03~'24) : 면적) 9,044천㎡, 인구) 6만명, 조성예산) 1조 5천억

□ 추진배경

○ 남악신도시 인구 유입 및 코로나19로 **산림·공원 이용률**이 **50% 이상 급증**하고 있으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원** 등 **녹색 공간 태부족**

- 1인당 공원면적 : 전국)17.44㎡ → 전남)31.68㎡→무안)11.85㎡(전국 최하위권)

○ 남악신도시 상권 및 주택가 주변 **부족한 주차장**을 도시 미관을 해쳤던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 공간으로 제공

□ 사업개요

○ 기간/대상

- 모두누리 숲 : '18. ~ '23.(6년) / 오룡산, 남악공원, 신도시 내 유휴지
- 주차장 : '18. 1. ~ '21. 8 / 남악신도시 내

○ 사업규모

- 모두누리 숲 : **54.5ha**(유휴 토지 41.6, 리모델링 등 12.9), 6.2km/19개 사업
- 주차장 : **34개소**(34,750㎡/주차면 941면) *** 대형 12, 일반형 929**

○ 사 업 비

- 모두누리 숲 : 218억원(국비 47, 도비 57, 군비 114)
- 주차장 : 3.3억원

○ 사업내용

- 모두누리 숲 : 미세먼지 차단 숲, 도심 경관 숲, 만남의 숲, 쌈지 숲 등
- 주차장 : 남악신도시 유휴부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 추진실적

○ "모두누리 숲 조성계획" 수립 및 현장 확인 : '18. ~ '19.

○ 예산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사전협의**·간담회 : '19. 11. ~ '20. 11.

- **국회·산림청** 방문·협의(4회), **익산국토관리청** 등 방문·협의(10회), 활성화 간담회(3회)

○ 영산강 경관 숲 등 **공모사업**(산림청) **신청·선정**(19개 사업/218억원) : '19. ~ '21.

○ **임시공영주차장 34개소 조성** 완료

- '18년 : 8개소, 13,348㎡(278면), '19년 : 5개소, 978㎡(51면)
- '20년 : 11개소, 9,471㎡(321면), '21년 : 12개소, 10,952㎡(279면)

□ 기대효과

○ 1인당 공원면적 전국 최하위에서 **평균수치 근접**(11.85㎡→**16.4㎡**)

- 유휴 토지 공원화(수목 100만본, 54.5ha)로 연간 9천kg(54.5ha×168kg) 미세먼지 저감

○ 도심 내 **신개념 숲** 조성으로 도민들의 **치유**와 **힐링 공간** 마련

- 도 공모를 통해 "2021년 정원페스티벌" 개최로 선정 : '21. 9. 23. ~ 27.

○ 고질적인 남악신도시 **주차난 해소**로 불법주정차 근절에 **기여**

- '18년) 7,275건 → '19년 14,090건 → '20년 8,397,건 → '21. 7.) 1,756건
  ※ 연평균 1,839건 감소

참고자료 “모두누리 숲” 및 “주차장” 조성 사진

- 모두누리 숲(조성계획) -

- 2021년 정원페스티벌 -

- 유휴 토지 활용 전-

- 유휴 토지 활용 후-

- 주차장 조성 전 -

- 주차장 조성 후 -

2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 창출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민·관·학의 유기적 협력으로 매출 증가
○ 장애인,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신규 사업 발굴로 일자리 창출

□ 추진배경

○ 지역 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통해 판로 개척 등 기업경쟁력 강화
○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을 통해 상생 고용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현재까지
○ 대상기업 : ㈜○○○○○○○○, ㈜○○○○○산업
○ 사 업 비 : 96백만원(국비 34, 도비 19, 군 32, 자부담 11)
○ 사업내용

기 업 명 (인증년도)	지원사업	생산품목	예산액 (백만원)	비고
계			96	
㈜○○○○○○○ (예비, 2019년)	교반 장치 등 시설 장비 및 홍보비 등	지역 농산물 이용 양파즙 등 식품제조 가공 및 엽채류 등	71	
㈜○○○○○산업 (예비, 2020년)	멸균기 등 시설장비 및 홍보비 등	지역 농산물 이용 식이섬유 음료 제조 및 반려 동물 사료 제조 등	25	

□ 추진성과

○ (매출액 증가) 전년대비 127%↑ ('20년 2,841백만원, '21년 6,474백만원)
○ (일자리창출 증가) 전년대비 88% ↑ ('20년 25명, '21년 47명)

기업명		2019년	2020년	2021.8	비 고
㈜○○○ ○○○○	매출액	798백만원	1,270백만원	1,974백만원	'20년 대비 55% ↑
	일자리	-	9명	19명(장애인 2명 포함 취약계층 10명	110%
㈜○○○ ○○산업	매출액	695백만원	1,571백만원	4,500백만원	'20년 대비 186%↑
	일자리	-	16명	28명(장애인 10명 포함 취약계층 19명	75%

□ 주요 사업 내용

기 업 명 (인증년도)	주요 사업 내용
㈜○○○ ○○○○	○ 식물공장 구축·운영(국비 9억, 폐교 활용, 전라남북도 최초) - 6개소 납품 1.5억원 ○ 2021년 해외진출컨설팅 지원사업 - 양파즙 외 3개 제품 중국, 홍콩 등 수출 ○ 농업기술센터 급식지원사업 - 트리플, 등대 등 학교급식유통 업체 납품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 지원사업 : 년 2명 이상 고용
㈜○○ ○○○산업	○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 - 장애인 10명 고용, 판매처 13개소 확보 ○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선정 - 시제품 개발(5개), 일본, 홍콩, 베트남 등 5개국 수출 ○ R&D과제 선정(2.5억원) - 해초류 강정 개발(현재 제조기술 특허출원 중)

□ 생산 및 수출 사례

㈜○○○○○○○	 ▲ 샐러드 식물공장 구축('20.12.)	 ▲ 중국 대련 수출('21. 9. 3)
㈜○○○○○○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	 ▲ 몽골 첫수출('21. 7. 1)

□ 향후계획

○ 일자리 창출 확대 20명((주)○○○○○○○○ 6, ㈜○○○○○○산업 14)

○ 가족친화 인증기업 및 진로 체험학습 기업 지정 등

5. 사전컨설팅 사례

1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인 면허취소처분 유예 가능 여부 건

1. 신청사유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00. 00. 00.), 상속인(자녀) 신고('00. 00. 00.)

○ 신고 수리('00. 00. 00.), **상속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직접승계 희망**

○ 직접승계 요건 미충족(90일 이내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업면허취소 가능**

⇒ 한국교통안전공단 0000**년 교통안전교육 예약 마감, 교통안전교육 이수 가능시기**까지 **사업면허취소처분 유예**가 **가능**한지에 관해 사전컨설팅 신청

2. 검토 의견서

○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인 면허취소처분 유예 가능 여부 : **가능**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은 '00. 00. 00.「여객자동차운수법」제15조에 따라 **상속 신고를 하고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했음
- 「여객자동차운수법」 제19조에 따르면, 상속에 의한 운송사업자는 **90일 이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청은 상속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 그런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은 현재 **전체 일정 예약이 마감되어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상속인이 '00. 00. 00.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사업면허취소에 해당**됨
- 상속인의 '사업면허 취소' 사유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00년 교통안전교육 미이수일 것인데, 교육 미이수의 원인이 **상속인의 태만이나 해태로 인한 것이 아닌 교육예약 조기 마감에 의한 것**으로 당사자의 귀책사유로만 볼 수는 없음
- 따라서 **상속인이 요건 미충족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가능한 시기까지 면허취소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6. 처분요구서

목 차

①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등 업무 처리 부적정(권고) ····· 30

② 무안군○○단 운영비 지원 부적정(통보) ····· 36

③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 38

④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 42

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 45

⑥ ○○○○위험지구 사업수행능력 평가업무 등 부당 추진
(경징계, 훈계, 시정, 주의, 통보) ····· 48

⑦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 62

⑧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 부적정(시정) ····· 67

⑨ 세입세출외현금 세입관리 부적정(시정) ····· 71

⑩ 폐수도계량기 관리 및 매각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 75

⑪ 차고지 및 유가보조금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 79

⑫ 지연배상금 산정 등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 84

⑬ 전시물 설계 등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 88

⑭ 사회보장급여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 93

⑮ 무안군○○회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훈계, 시정) ····· 104

⑯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선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훈계, 시정) ····· 108

⑰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사후관리 등 부적정(시정) ····· 113

⑱ 농업·기술지도 분야 민간보조사업 등 추진 부적정(통보, 시정) ····· 117

⑲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훈계, 시정) ·· 126

⑳ 재난관리기금 집행 부적정(주의) ····· 131

㉑ ○○○ ○○○○위험 개선지구 사업 추진 부적정(훈계, 통보) ····· 133

㉒ 연안정비사업 추진 부적정(훈계, 시정) ····· 140

㉓ 공공건축물 건축기획 등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 145

㉔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 148

㉕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 157

㉖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 161

㉗ 무안 ○○길 ○○○○공원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훈계) ····· 165

전 라 남 도
권 고

제 목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무안군(문화체육과)

내 용

1. 업무개요

무안군은 무안종합○○○○○ ○○연습장 회원관리 및 ○○레슨 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20.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총 3회[1]에 걸쳐 기간제근로자(이하 “레슨프로 기간제근로자”라 한다) 1명을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고 있다.

2.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및 보수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무안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8조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의 담당업무의 특성·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보수 수준을 결정하되, 보수 지급기준은 해당 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무안군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에 대하여 기본급[2], 퇴직금,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산재보험 기관부담금, 건강·장기요양보험 기관부담금, 연차수당 등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

1) 2020. 00. 00.부터 2020. 00. 00.까지, 2021.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2021.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2) 기본급은 일급×근무일수

여를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4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되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무안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수 전액에 대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와 무안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문화체육과, 구 체육시설사업소)은 2020. 00. 00.부터 2022. 00. 00.까지 채용된 무안종합○○○○○ ○○연습장 레슨프로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일급 00,000원 이외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도 않은 ○○연습장 회원의 ○○레슨비 수익까지 보수로 지급[3]한다는 근로계약서를 부당하게 체결한 후 2020. 7월부터 2021. 7월까지 [표 1] “예산에 미편성된 기간제근로자 보수지급 현황”과 같이 적게는 월 150,000원, 많게는 월 4,950,000원 등 총 15,450,000원의 ○○레슨비 수익을 레슨프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로 추가 지급하였다.

또한 레슨프로 기간제근로자에게 ○○레슨비 수익 15,450,000원을 추가 보수로 지급하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도 원천징수 하지 않았다.

3) ○○레슨비는 1인당 월 000,000원이며 월 레슨회원이 4명 이하일 경우 모두 레슨프로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 월 레슨회원이 5명 이상일 경우는 2명분은 군 세입처리하고 나머지는 레슨프로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

[표 1] 예산에 미편성된 기간제근로자 보수지급 현황(2020.7월~2021.7월)

(단위 : 명, 원)

해당월	○○연습장 회원의 레슨비 납부 현황		군 세입 현황		예산 편성없이 추가지급된 보수지급액	
	인원(A)	금액(B)	인원(C)	금액(D)	인원(A-C)	금액(B-D)
계	121	18,150,000	18	2,700,000	103	15,450,000
2020.07월	1	150,000	-	-	1	150,000
2020.08월	8	1,200,000	2	300,000	6	900,000
2020.09월	-	-	-	-	-	-
2020.10월	11	1,650,000	2	300,000	9	1,350,000
2020.11월	35	5,250,000	2	300,000	33	4,950,000
2020.12월	12	1,800,000	2	300,000	10	1,500,000
2021.01월	7	1,050,000	2	300,000	5	750,000
2021.02월	3	450,000	-	-	3	450,000
2021.03월	10	1,500,000	2	300,000	8	1,200,000
2021.04월	-	-	-	-	-	-
2021.05월	15	2,250,000	2	300,000	13	1,950,000
2021.06월	10	1,500,000	2	300,000	8	1,200,000
2021.07월	9	1,350,000	2	300,000	7	1,050,000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기준을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수를 추가 지급 중이고, 소득세 등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도 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레슨비 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무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르면 무안군 체육시설인 무안종합○○○○○ ○○연습장의 사용료는 이용자에 대하여 정기회원권료, 쿠폰회원권, 일일입장료[4]를 징수하고 시설물에 대하여는 락카사용료[5]를 징

4) (정기회원권) 1개월 80,000원, 자유이용권(1개월) 100,000원, 3개월 210,000원, 6개월 390,000원, 12개월 720,000원 / (쿠폰회원권) 35회/3개월 120,000원, 100회/6개월 300,000원, 200회/1년 560,000원 / (일일입장료) 30분

5) 사용료 : 6,000원, 60분 10,000원, 120분 15,000원 / (락카사용료) 월 5,000원(보증료 10,000원)

수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르면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무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6]」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무안군 회계관계공무원 회계관직 지정 명세”와 같이 지정한다고 되어 있고, 분임징수관은 세무회계과장, 신도시지원단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과장, 제1관서의 세입업무담당과장으로 지정하며, 수입금출납원은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팀장, 제1관서의 세입업무팀장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관련 조례에 따라 무안종합○○○○○ ○○연습장의 사용료는 정기회원권, 쿠폰회원권, 일일입장료, 락카사용료에 한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팀장 등 수입금출납원으로 지정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문화체육과, 구 체육시설사업소)은 「무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무안종합○○○○○ ○○연습장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항목으로 ○○레슨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도 2020. 7월부터 2021. 7월까지 [표 2] “○○레슨비 부당 징수 현황”과 같이 ○○레슨 수강자로부터 월 000,000원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내부결재[7]를 근거로 ○○레슨 수강자 총 121명으로부터 ○○레슨비로 18,150,000원을 조례에 근거없이 부적정하게 징수하였고, 징수업무의 권한이 없는 레슨프로 기간제근로자로 하여금 수강자로부터 직접 ○○레슨비를 징수·관리하고 있는데도 2021. 9. 7.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

6) 구) 「무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2021. 6. 30. 일부개정)

7) 무안군 체육시설사업소-4117(2020.8.7.), 무안○○○○○ ○○연습장 ○○레슨 프로그램 운영계획
- ○○레슨비 : 취미과정 000,000원(1개월/12회/15분씩)

[표 2] ○○레슨비 부적정 징수 현황(2020.7월~2021.7월)

(단위 : 명, 원)

○○레슨비 부당 징수 현황				○○레슨비 부당 징수 현황			
징수 기간		인원	금액	징수 기간		인원	금액
총		121	18,150,000	2021년	소계	54	8,100,000
2020년	소계	67	10,050,000		1월	7	1,050,000
	7월	1	150,000		2월	3	450,000
	8월	8	1,200,000		3월	10	1,500,000
	9월	-	-		4월	-	-
	10월	11	1,650,000		5월	15	2,250,000
	11월	35	5,250,000		6월	10	1,500,000
	12월	12	1,800,000		7월	9	1,350,000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가 징수되고, 징수 권한이 없는 자가 징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 회계 질서가 문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무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무안군수**는 앞으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정·지급하도록 하고, 체육시설의 ○○레슨비를 사용료로 징수할 시에는 관련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며, 징수 권한이 있는 자가 ○○레슨비를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권고)**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통 보

제 목 무안군○○단 운영비 지원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무안군(자치행정과)

내 용

1. 업무개요

무안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무안군 ○○단 지원 조례」에 따라 무안군 ○○단(대표 ○○○)에 운영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표] “무안군 ○○단 보조금 지원 현황”과 같이 92,785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표] 무안군 ○○단 보조금 지원 현황(2018~2020년)

(단위 : 천원)

계	2018년	2019년	2020년
92,785	44,200	44,200	4,385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1]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지원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기준」[2]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서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를 말하고,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법령의

1) 現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정, 2021. 7. 13. 시행) 제6조 제2항

2)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4065(2014. 9. 16.),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의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지원 관련 규정 해석기준 통보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로 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한하여 이를 법령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32조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보조사업자에게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려면 법령에서 운영비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위임한 경우에 대해서만 지원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자치행정과)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관련 법령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위임하지 않았는데도 「무안군 ○○단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3]을 근거로 무안군 ○○단에 운영비 목적으로 92,785천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하였다.

그로 인하여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는 보조사업자에게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무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무안군수**는 「무안군 ○○단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의 무안군 ○○단의 운영비 지원 사항은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른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하고, 앞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3) 제6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단의 원활한 활동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휘자와 반주자의 수당을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휘자와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무보수로 한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무안군(기획실, 자치행정과)

내 용

1. 업무개요

무안군은 2018. 10월부터 2021. 7월까지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 직원 74명의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처리하였고, 6급 이하 소속 직원 25명의 경징계 요구 건에 대하여 무안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분하였다

2. 징계요구 부당 처리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제3호에 따르면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을 통보 받은면「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제1항 제1호 가에 따르면 시·도와 시·군·구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 사건은 시·도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5급 이상의 소속 직원에 대한 범죄사건 통보 결과가 기소유예 결정이면 징계사건의 심의·의결 권

한이 있는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기획실)은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으로부터 2019. 00. 00. 통보받은 지방○○5급 ○○○의 ○○○○○○법 위반 기소유예결정건에 대하여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채 2019. 00. 00. 부당하게 자체 내부 종결하였다.

그로 인하여 징계요구부서(기획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전라남도인사위원회의 징계 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었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에 대한 심사 절차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르면 징계처분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의결을 요구한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의결 심사 청구서에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 인사실무(행정안전부) 제9장 복무 및 징계의 3. 징계편에 실제로 심사를 하기 전에 권한있는 징계처분권자가 적법하게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비록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심사청구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 후에는 심사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징계요구부서의 경징계 요구에 대한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

를 처분할 때는 우선 그 의결 결과를 징계요구부서에 통보하여 징계요구부서의 심사 청구 의사를 확인한 후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자치행정과)은 2018. 10월부터 2021. 7월까지 징계요구부서(기획실)로부터 [별표] “징계의결 심사 절차 위반 명세”와 같이 총 25명에 대하여 경징계 요구를 받아 징계업무를 처리하면서 무안군인사위원회 징계의결 결과를 징계요구부서(기획실)에 통보하면서 징계요구부서(기획실)의 심사 청구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처분을 함께 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징계요구부서(기획실)의 심사 청구가 불가능해져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소홀히 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무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무안군수**는 앞으로 징계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처리하고,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결과를 처분할 때는 그 의결 결과를 징계요구부서에 통보하여 징계요구부서의 심사 청구 의사를 확인한 후 징계대상자에게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무안군(자치행정과)

내　　용

1. 업무개요

무안군은 2018. 10월부터 2021. 7월까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영 제31조의2제5항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되 제출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제5항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고, 평가항목에 따른 평정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또는 제32조제8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방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수”(20%), “우”(40%), “양”(30%), “가”(10%)의 분포비율에 맞게 정하되,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가"의 비율을 "양"의 비율에 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평정단위별 순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체 근무성적평정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근무성적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정한 순위별 점수가 부여되도록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자치행정과)은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표 1] “평정단위 서열명부 순위를 변경한 부당 근무성적평정 명세”와 같이 2018년 하반기(2018. 12월)에 4명, 2019년 하반기(2020. 1월)에 2명에 대하여 평정단위별 서열열부 순위와 다르게 부당하게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표 1] 평정단위내 근무성적평정 부당 변경 명세

연번	평정 시기	평정 단위	대상자		근무성적평정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직렬	이름	평정단위별 순위	심의의결 결과		
						순위	점수	
1	2018년 하반기	재무과	○○6급	○○○	9	78	45.1	미등재자
2			○○6급	○○○	10	77	45.4	미등재자
3		망운면	○○6급	○○○	2	68	48.1	미등재자
4			○○6급	○○○	3	46	55.3	미등재자
1	2019년 하반기	사회 복지과	○○9급	○○○	4	12	61.9	미등재자
2			○○9급	○○○	5	11	62.2	미등재자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18년 하반기(2018. 12월)에는 지방○○9급 근무성적평정대상자가 4명이므로 “수”(1명), “우”(2명), “양”(1명)의 분포비율대로 근무성적평정점을 부여하여야 하는데도 [표 2] “근무성적평정점 부당 부여 명세”와 같이 지방○○9급 근무성적평정 1순위에 해당하는 근무성적평정점을 70점이 아닌 63.7점으로 부당하게 부여하였다.

[표 2] 근무성적평정점 부당 부여 명세

평정 시기	평정 단위	대상자		근무성적평정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직렬	이름	평정단위별 순위	심의의결 결과		부당 부여점수	
					순위	점수		
2018년 하반기	해양 수산과	○○9급	○○○	1	1	70	63.7	미등재자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근무성적평정상의 선순위와 후순위가 바뀌고 정당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부여되지 않는 등 근무성적평정업무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무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무안군수**는 앞으로 인사징계법령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평정단위별 순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체 근무성적평정순위를 결정하고, 근무성적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정한 순위별 점수가 부여되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무안군(산림공원과)

내　　용

1. 업무개요

무안군은 2018. 10월부터 2021. 7월까지 예찰 활동, 소나무류 이동단속, 고사목 제거 및 예방나무주사 등 방제사업 추진을 위하여 1,052백만원의 국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 미구성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방제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지역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지역 재선충병 방제대책 수립,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과 관련하여 관내 지역의 경찰관서, 도로관리기관, 국립공원관리기관 등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 정보의 공유, 공동예비관찰조사 및 공동방제의 실시, 그 밖에 지역 단위

방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관내 지역의 경찰관서, 도로관리기관, 국립공원관리기관 등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재선충병 방제와 관련한 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 정보의 공유, 공동예비관찰조사 및 공동 방제의 실시, 그 밖에 지역 단위 방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산림공원과)은 2015. 10. 30. 무안군 ○○읍 ○○리 000번지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이후 10개 구역(○○읍 1개 리, ○○면 9개 리)으로 확산되어 소나무류가 지속적으로 고사되고 있는데도 “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를 2021. 9. 7. 감사일 현재까지 구성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소나무재선충 완전방제를 위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소나무재선충병 예찰활동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림청「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Ⅲ. 2 예찰의 구분 편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은 대상지에 따라 미발생지역 예찰과 발생지역 예찰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Ⅲ. 2 미발생지역 예찰 편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미발생지역에 대한 예찰은 감염의심목의 조기 발견과 감염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선단지 중 피해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월 2회 이상, 최근 2년 이내에 반출금지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과 반출금지구역 인근 숲가꾸기 및 벌채 사업지 등은 월 1회 이상, 소나무류 취급업체 주변 등 인위적 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소나무류 보존가치가 큰 산림지역은 월 1회 이상 예찰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이 미발생지역에 대하여도 감염의심목 조기 발견과 신속한 감염여부 진단을 위하여 선단지 중 피해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 주변 등 인위적 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등 전문인력을 동원하여 주기적으로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산림공원과)은 2019년부터 2021. 9. 7. 감사일 현재까지 선단지 중 피해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 소나무재선충병 미발생지역도 월 1회에서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예찰하여야 하는데도 예찰을 실시하지 않은 채 무안군 ○○읍 ○○리 000번지 등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10개 구역(○○읍 1개 리, ○○면 9개 리)에만 국한하여 지상예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예찰·방제에 집중하여 감염의심목을 조기에 발견하여 확산을 차단하여야 할 전문 인력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본연의 업무가 아닌 산불·임도 사업 업무 지원에 투입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2015. 10월 소나무재선충병이 첫 발생된 이후 확산을 차단하지 못하고 매년 발생지역이 점차 확대(2015년 1개 리, 2018년 2개 리, 2019년 6개 리, 2020년 10개 리)되어 소나무류가 지속적으로 고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무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무안군수**는 앞으로 관내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되지 않은 지역도 주기적으로 예찰을 실시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 라 남 도

징계·훈계·시정·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위험지구 사업수행능력 평가업무 등 부당 추진

관계기관(부서) 무안군(안전총괄과)

징 계 대 상 자 무안군 ○○○○과 지방○○주사 ○○○

무안군 ○○○○과 지방○○서기보 ○○○

징 계 의 종 류 경징계

훈 계 대 상 자 무안군 ○○○○○○○○ 지방○○사무관 ○○○

내 용

1. 업무개요

무안군은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0. 00. 00. ○○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지명경쟁방식)하고, 같은 해 00. 00.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20. 00. 00. (주)○○○○○○○과 공동도급으로[1](이하 “(주)○○○○○○○” 이라 한다) 계약(계약금액 935,800천원, 계약기간 0000. 00. 00.~00. 00.)을 체결하였다.

또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2005년부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고 국가안전

1) ㈜○○○○○○ : 55.864%, ○○○○○(주) : 13.966%, ㈜○○ : 30.17%

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 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예치하여 관리·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2]를 구성하여 기금운용 계획수립 및 성과 등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전라남도 종합감사기간(2021. 8. 25.~9. 7.)중 위 사업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정당하게 서류확인과 평가를 하였다면 (주)○○○○○○○이 탈락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도 관리 및 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해당업체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관련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고 무안군은 이에 대한 검토를 태만히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난관리기금도 관리가 부실하게 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서류 사실과 다르게 제출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20. 00. 00. 공고한(무안군 공고 제0000-000호) “○○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에 따르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된 평가서의 내용은 우리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규정

군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르게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조치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제9절에 따르면 해당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은 2020. 00. 00. 위 용역 관련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자 심사서류 제출 각서"를 무안군에 제출하면서 모든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만일 관련 자료 중 일부분이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입찰 자격 상실 계약해지 또는 배상의 청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는 것으로 각서를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위 용역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해당업체로부터 제출받아 평가하면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했다.

또한 ㈜○○○○○○○은 위 용역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아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무안군(안전총괄과)은 2020. 10월경 위 용역 관련 ㈜○○○○○○○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평가하면서 [표 1]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현황"과 같이 전차 용역[3]에 참여하여 가점(0.48점)을 받은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을 당초 '△△△'과 '△△△'에서 용역에 참여하지 않고 자격이 미달되는 '○○○'과 '○○○'으로 변경하여 승인도 받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는데도 계약체결 이전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2021. 9. 7. 현재까지 계약 해제·해지를 하지 않고 있다.

---

3) ○○ ○○○○위험 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계약금액 13,880천원, 사업기간 0000. 00. 00.~00. 00. 계약자 ㈜○○○○○○)

[표 1]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현황

분 야	제 출 내 역				부 당 사 항
	당초		변 경		
	성명	자격	성명	자격	
분야별책임 기술자명단	△△△	수자원개발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기 술 사	전차 용역 미참여
	△△△	토목구조 기 술 사	○○○	자격미달	전차 용역 미참여, 자격 미달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이번 감사기간 동안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위를 파악해 본 결과 ㈜○○○○○○○은 [표 2] “평가 자료 사실과 다르게 제출 및 낙찰 흐름도 현황”과 같이 2019. 00월경 전차용역을 준공한 뒤 2020. 00. 00. 기술용역 실적증명서를 안전총괄과 담당자(지방○○서기보 ○○○외 1명)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4]을 받고 발급받은 기술용역 실적증명서를 그대로 같은 해 00월경 발주한 ○○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관련 수행능력 평가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실제로 전차 용역에 참여하지 않고 자격이 미달되는 참여기술자로 [표 2] “평가 자료 사실과 다르게 제출 및 낙찰 흐름도 현황”과 같이 실적증명서 첨부물을 바꿔치기하는 방법[5]으로 실제 참여하지 않은 ‘△△△’과 ‘△△△’으로 교체하여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다.

[표 2] 평가 자료 사실과 다르게 제출 및 낙찰 흐름도 현황

전차용역 준공 (0000. 00월)		실적증명서 발급 (0000. 00.00)		실적증명서 사실과 다르게 재발급 (0000.00월)		평가자료 제출 (0000.00월)		평가시 가점부여 (0000.00월)		낙찰 및 계 약 (0000.00.00.)
○○ ○○○○위험 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 ○○)	➡	(무안군→ ㈜○○○○○ ○)발급 분야별 책임기술인 (△△△ 등 10명) ※ 정상발급	➡	※ 실적증명서의 첨부서류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명단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여 재발급 (당초 △△△,△△△ ⇒ 변경 ○○○, ○○○)	➡	(㈜○○○○○○ →무안군)제출 ※ 분야별책임 기술인 명단 사실과 다르게 제출 (○○○, ○○○	➡	사실과 다르게 서류를 제출 하였고, 0.48점 가점부여받아 ㈜○○○○○○이 최고점(1위)	➡	수행능력 평가(70%)+ 가격(30%) 합산하여 ㈜○○○○○○ 과 계약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4) 위 [표 1]과 같이 전차용역에 참여하고 참여기술 자격이 있는 ‘△△△’과 ‘△△△’를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발급

5) 기술용역실적증명서 앞장은 2020. 00월에 무안군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첨부물만 같은 해 00월경에 사실과 다르게 교체하여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아 평가자료로 제출

또한 ㈜○○○○○○○술은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분야별 책임기술인 명단으로 가점까지 부여받아 용역 관련 수행능력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1위가 되었다.

더욱이 ㈜○○○○○○○술은 당초 명단으로 제출한 '△△△'과 '△△△'는 전차 용역에 참여하고 참여자격이 있는 반면, 변경 제출한 '○○○'과 '○○○'은 전차 용역에 참여하지 않고 기술자격이 미달되는데도 가점을 받아 낙찰자로 결정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다.

그로 인하여 ㈜○○○○○○○은 사실과 다르게 서류를 제출하여 위 용역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대상인데도 오히려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가점(0.48점)을 받아 결국 935,800천원 상당의 용역을 낙찰받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1) ○○○의 경우

○○○는 2020. 00. 00.부터 같은 해 00. 00.까지 약 1년간 위 용역 관련 업무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중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을 위 [표 1] "평가 자료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현황"과 같이 전차 용역에 참여하지 않고 기술자격이 미달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는데도 제출된 평가 자료에 대한 확인 및 검증 등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였더라면 ㈜○○○○○○○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아 탈락될 업체였는데도 오히려 가점을 받아 결국 935,800천원 상당의 용역을 낙찰받게 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의 경우

○○○은 2020.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약 1년 6개월간 위 용역 관련 업무담당팀장으로서 업무담당자 ○○○를 지도·감독할 직급 상급자 위치에서 ㈜○○○○○○○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중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을 위 [표 1] "평가 자료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현황"과 같이 전차 용역에 참여하지 않고 기술자격이 미달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는데도 업무담당팀장으로서 제출

된 평가 자료에 대한 확인 및 검증 등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였더라면 ㈜○○○○○○○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아 탈락될 업체였는데도 오히려 가점을 받아 결국 935,800천원 상당의 용역을 낙찰받게 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의 경우

○○○은 2020. 00. 00.부터 같은 해 00. 00.까지 1년간 위 용역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서 업무담당자와 업무담당팀장이 ㈜○○○○○○○에서 제출한 평가 자료에 대한 확인 및 평가를 제대로 하였더라면 ㈜○○○○○○○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아 탈락될 업체였는데도 오히려 가점을 받아 결국 935,800천원 상당의 용역을 낙찰받게 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도록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확인 및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발급 태만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51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과 확인요령'에 따르면 실적증명서 발급은 공사대장, 준공조서, 회계·계약서류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6조에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중인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유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위 용역 관련 해당업체로부터 사업수행 능력 평가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발급 요청이 오면 공사대장, 준공조서, 회계·계약서류 등 각종 공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야 했다.

또한 해당업체로부터 제출된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중인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유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했다.

그리고 기술용역 이행실적 실적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담당자는 준공서류 등 관련자료를 확인하고 팀장, 과장 결재를 받아 발급하고, 팀장과 과장은 정확한 실적증명서가 발급되도록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무안군(안전총괄과)은 2020. 00. 00. ㈜○○○○○○○에게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을 위한 '△△△'과 '△△△' 등 10명이 포함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해 준 건에 대하여 발급 후 6개월이 2020. 00월경(날짜 미기록) ㈜○○○○○○○술이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첨부문서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명단을 실제 투입한 명단과 다르게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발급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요청하자 준공조서 등 용역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위 '제2항'과 같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면 발급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관련 준공서류 등을 확인하지 않고 기술용역 실적증명서를 발행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업무담당자의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발급 태만으로 ㈜○○○○○○○이 '제2항'과 같은 특혜를 받은 반면, 동종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1) ○○○의 경우

○○○는 2020. 00. 00.부터 같은 해 00. 00.까지 약 1년간 ○○지구 ○○○

○ 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대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발급업무를 하면서 2020. 00월경(날짜 미기록) ㈜○○○○○○○이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을 목적으로 2020. 00. 00. 발급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의 재발급을 실제 투입한 분야별 책임기술인 명단과 다르게 작성한 후 요청하였는데도 준공조서 등 용역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그대로 도장날인하고 부당하게 발급하였다.

그로 인하여 ㈜○○○○○○○의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하여 위 용역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대상이었는데도 오히려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가점(0.48점)을 받아 결국 935,800천원 상당의 용역을 낙찰받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의 경우

○○○은 2020.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1년 6개월 동안 위 용역 관련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발급 업무담당팀장을 하면서 ㈜○○○○○○○로부터 0000. 00. 00.과 같은 해 00월경(날짜 미기록) 각각 2회에 걸쳐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을 위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발급 요청을 업무담당자가 받았으면 업무담당팀장으로서 당시 업무담당자 지방○○서기보 ○○○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된 직원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업무담당자가 본인과 과장 결재도 없이 실적 증명서를 1인 결재하여 날인하고 2020. 00월과 00월에 2회에 걸쳐 발급할 때까지 지도·감독할 직상급자로서 알지 못한 채로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한 업무담당자가 9급으로 본인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챙겼더라면 충분히 방지 할수 있는 사항이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기술용역 실적증명서를 단독으로 발급함으로서 어떤 업체에게는 특혜가 가고, 동종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업무담당팀장으로서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매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와 같이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3) ○○○의 경우

○○○은 2020. 00. 00.부터 같은 해 00. 00.까지 위 용역 관련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발급 업무담당과장을 하면서 ㈜○○○○○○○로부터 2020. 00. 00.과 같은 해 00월경(날짜 미기록) 등 2회에 걸쳐 업무담당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을 위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발급요청을 받은 후 실적증명서를 팀장과 본인의 결재도 없이 1인 결재하여 날인하여 발급하고 있는데도 지휘 감독할 업무담당과장으로서 이를 알지 못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 선정 시 외부위원 제척 등 공정성 훼손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행정안전부「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의 심의를 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은 외부전문가 및 발주청의 소속직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전라남도 및 타 시·군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평가위원은 평가 당일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위 용역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평가당일 추첨을 통해 선정함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무안군(안전총괄과)은 2020. 00월경(공문서에 날짜 미기재) 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계획을 마련하여 군수결재를 받으면서 평가위원을 외부위원은 제척하고 내부위원(과장1, 팀장 4)으로만 위촉하여 결재를 득한 후, 내부위원[6]만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평가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였다.

또한 평가위원을 평가당일 선정하지 않고 10여일 전에 미리 선정하여 군수결재를 받으면서 결제 및 협조자(10여명)에 공개되어 불공정한 평가의 우려가 있게 하였다.

---

6) ○○○○과장 ○○○(○○5급), ○○○○과 ○○○○팀장 ○○○(○○6급), ○○○○과 ○○○○팀장 ○○○(○○6급), ○○○○과 ○○팀장 ○○○(○○6급), ○○○○○○○ ○○○○○팀장 ○○○(○○6급)

이에 무안군은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내부위원으로만 선정해도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고문에 게재한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 고시「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9조에 따라 발주청은 평가위원을 외부전문가 및 발주청의 소속직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타당하지 않다.

다.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1) ○○○의 경우

○○○는 2020. 00. 00.부터 같은 해 00. 00.까지 약 1년간 업무담당자로서 0000. 00월경(공문서에 날짜 미기재) 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계획을 마련하여 군수결재를 받으면서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평가위원을 외부위원은 제척하고 내부위원(과장 1, 팀장 4)으로만 위촉하여 결재를 득한 후, 내부위원[7]만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위 용역 관련 자료를 평가하게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였다.

또한 평가위원을 평가당일 선정하지 않고 10여일 전에 미리 선정하여 군수결재를 받으면서 결재 및 협조자(10여명)에 공개되어 불공정한 평가의 우려가 있게 하였다.

(2) ○○○의 경우

○○○은 2020.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약 1년 6개월간 업무담당팀장으로서 업무담당자 ○○○를 지도·감독할 직급 상급자 위치에서 업무담당자가 0000. 00월경(공문서에 날짜 미기재) 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계획을 마련하여 군수결재를 받기 위해 평가위원으로 외부위원은 제척하고 내부위원(과장1, 팀장 4)으로만 위촉하도록 보고하자 관련규정에 맞지 않는데도 그대로 결재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평가위원을 외부위원은 배척한 채 내부위원만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위 용역 관련 자료를 평가하게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였다.

---

7) ○○○○과장 ○○○(○○5급), ○○○○과 ○○○○팀장 ○○○(○○6급), ○○○○과 ○○○○팀장 ○○○(○○6급), ○○○○과 ○○팀장 ○○○(○○6급), ○○○○○○○ ○○○○○팀장 ○○○(○○6급)

그리고 업무담당팀장으로서 평가위원을 평가당일 선정하지 않고 10여일 전에 미리 선정하여 군수결재를 받으면서 결재 및 협조자(10여명)에 공개되어 불공정한 평가의 소지가 있게 하였다.

(3) ○○○의 경우

○○○은 2020. 00. 00.부터 같은 해 00. 00.까지 1년간 업무담당과장으로서 업무담당자가 2020. 00월경(공문서에 날짜 미기재) 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계획을 마련하여 군수결재를 받기 위해 내부위원(과장1, 팀장 4)만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위촉하도록 보고를 하자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데도 그대로 결재하여 결국 내부위원만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위 용역 관련 자료를 평가하게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였다.

5. 재난관리기금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무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은 의무예치액으로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이자는 사용가능액으로 예치하여 해당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르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등 5종의 대장[8]을 비치하며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8)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4. 적립금(의무예치금액) 관리대장, 5. 적립금(해당연도 사용기금액) 관리대장

기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매년 자연재해기간 전까지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등 장부를 작성·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무안군(안전총괄과)은 2018년 이전까지 발생된 의무 예치액 950,000천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잘 관리한 반면, 2018년 이후에는 [표 4] "재난관리기금 연도별 미적립 현황"과 같이 의무 예치액 총 158,543천원을 잘 모른다는 사유로 한 번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지 않았다.

[표 4] 재난관리기금 연도별 미 적립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법정 적립액	미적립 금액 (적립액의 15%금액)	정기예금액 (당해예치액)
계		**158,543**	
2018년	321,360	**48,204**	950,000 (-)
2019년	354,195	**53,129**	750,000 (-)
2020년	381,406	**57,210**	750,000 (-)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가능액과 함께 일반예금 통장에 예치·관리하며 전액을 사용하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등 5종의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는데도 이 또한 업무연찬이 부족하여 관리하지 않고 전산파일 및 통장으로만 기금을 관리하는 등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기록·보전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재난관리기금이 담당직원 외에는 현황을 확인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8년 이후 정기예금으로 관리할 경우 발생되는 4,552천원의 이자액 만큼의 예산손실을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무안군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부 개별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합당하지 않거나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었다.

다만 행위 당시 코로나19 대응 주무부서로서 24시간 상황근무, 관내 집합시설 점검 등 과중한 업무로 애로사항이 있었고, 군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발생한 일들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한다는 취지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선처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위험지구 사업수행능력 평가업무 등을 부당하게 추진한 지방○○주사 ○○○과 지방○○서기보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 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무안군수**는

①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수행능력 평가 업무 등을 부당하게 추진한 지방○○주사 ○○○, 지방○○서기보 ○○○ 등 2명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하고(**징계**)

② ○○○○위험지구 사업수행능력 평가 업무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지방○○사무관 ○○○은 훈계하며(**훈계**)

③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등에 따라 최근 3년간 미적립한 재난관리기금 총 158,543천원은 의무예치하고,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등 5종의 대장은 비치·기록관리 하며(**시정**)

④ 앞으로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준공조서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여 발급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주의**)

⑤ 사업수행능력 평가 위원을 선정 할 때에는「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9조에 따라 외부전문가 및 발주청의 소속직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은 평가당일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방안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에 대하여는 반드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계약 해지·해제 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취득세 부과·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무안군(세무회계과)

내　　용

1. 업무개요

무안군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표 1] “지방세 부과 · 징수현황”과 같이 지방세를 부과·징수하였다.

[표 1] 지방세 부과·징수현황(2018~2021년)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2018년	85,386	81,647	322	3,417
2019년	89,461	85,429	331	3,701
2020년	138,507	134,902	527	3,078
2021년	83,918	78,625	344	4,949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승강기 취득세 부과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법」제6조 제6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1호에 따르면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를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지방세법」제2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신고자료를 확보하여 소유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정 과세표준 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세무회계과)은 2021. 9. 7. 감사일 현재 [표 2] “승강기 취득세 추징대상 현황”과 같이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수선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가 취득세 4건 6,740천원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아 자주재원 확충에 부담을 초래하였다.

[표 2] 승강기 취득세 추징대상 현황

(단위 : 원)

연번	과세대상 물건지	납세자	신고일	추징세액	사유
	계	4건		6,740,640	
1	무안군 무안읍 ○○○○로 00 ○○빌딩	○○○	2021.00.00.	652,120	미신고
2	무안군 무안읍 ○○로 000 ○○빌딩	○○○	2021.00.00.	649,250	미신고
3	무안군 무안읍 ○○○길 000 ○○아파트	○○○	2020.00.00.	3,333,530	미신고
4	무안군 무안읍 ○○로 00 ○○○○○	○○○	2019.00.00.	2,105,740	미신고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작성일(2021. 9. 2.) 기준 가산세 포함

3. 임시용 건축물 취득세 부과 누락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법」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

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임시용 건축물에 한하여 임시용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정 과세표준 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무안군(세무회계과)은 2021. 9. 7. 감사일 현재 [표 3] “임시용 건축물 취득세 추징대상 현황”과 같이 임시용 건축물을 취득한 후 해당 임시용 건축물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세 4건 7,220천원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아 자주재원 확충에 부담을 초래하였다.

[표 3] 임시용 건축물 취득세 추징대상 현황

(단위 : 원)

연번	과세대상 물건지	납세자	신고일	추징세액	사유
	계	4건		7,220,460	
1	무안군 현경면 ○○리 000 가설건축물 714㎡ 신축	○○○	2019.00.00.	1,952,510	미신고
2	무안군 무안읍 ○○리 000 가설건축물 175㎡ 신축	○○○○건설(주)	2019.00.00.	906,260	미신고
3	무안군 일로읍 ○○리 000 가설건축물 108㎡ 신축	㈜○○○○건설	2019.00.00.	522,590	미신고
4	무안군 현경면 ○○리 0000 가설건축물 350㎡ 신축	(유)○○건설	2019.00.00.	3,839,100	미신고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작성일(2021. 9. 2.) 기준 가산세 포함

4. 감면분 취득세 추징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구 도세감면조례 제4조에 따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 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사후관리업무를 철저히 하고,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취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무안군(세무회계과)은 2021. 9. 7. 감사일 현재 [표 4] “취득세 면제 부동산의 추징대상 현황”과 같이 과세대상 물건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해당되지도 않는 등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경감한 취득세 1건, 2,233천원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추징하지 않아 자주재원 확충에 부담을 초래하였다.

[표 4] 취득세 면제 부동산의 추징 현황

(단위: 원)

과세대상	납세자	취득일	추징대상세액	사용용도
무안군 해제면 ○○리 00번지 (건물 270㎡)	○○○	2019.00.00.	**2,233,760**	감면대상 불가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작성일(2021. 9. 2.) 기준 가산세 포함

5.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 누락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납세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그 가액이 증가했는데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세무회계과)은 2021. 9. 7. 감사일 현재 [별표] “지목변경(태양광발전시설) 취득세 추징대상 명세”와 같이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어 토지 가액이 증가 되었는데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그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19건, 6,550천원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추징하지 않아 자주재원 확

충에 부담을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무안군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조속한 시일에 감사결과를 검토하여 부과(추징)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무안군수**는 부과(추징) 누락된 취득세 22,744천원을 부과(추징)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무안군(세무회계과, 건설교통과)

내　　용

1. 업무개요

무안군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징수권의 시효가 완성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다.

2. 세외수입 체납자 채권확보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차량 책임보험 과태료 등 세외수입금이 체납될 경우 차량에 압류조치를 하여야 하고, 차량 압류의 경우에는 강제폐차·차령초과 말소 등이 수시로 발생하므로 말소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압류 차량이 말소되었을 경우 즉시 압류해제 조치하고 다른 차량을 압류하여 징수권의 일실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세무회계과, 건설교통과)은 [별표 1] “세외수입 체납자 대체압류 대상 명세”와 같이 차령초과 등으로 등록 말소된 차량 및 사실상 폐차차량에 압류된 76건 18,886천원에 대하여 압류해제 조치를 하지 않아 마치 이 체납액에 대한 채권이 확보된 것처럼 관리되고 있고, 차량 소유자가 등록 말소된 차량대신 다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대체압류 등을 하지 않는 등 과태료 체납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3. 세외수입 시효소멸 결손처분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 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르면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세외수입 체납액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징수권이 소멸되므로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채권압류 조치를 하여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시효완성이 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세무회계과, 건설교통과)은 2021. 9. 7. 감사일 현재 채권압류 등 조치 없이 체납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별표 2] “세외수입 체납액 시효소멸 결손대상 명세”와 같이 105건 30,439천원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되었는데도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4. 세외수입 사망자 부과취소 등 정비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민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997조에 따르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42조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사망자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과태료 등 세외수입금을 부과할 때에는 부과대상자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건설교통과)은 2015. 12. 1. 00우0000 차량소유자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2015. 1. 22. 사망한 '○○○'에게 17천원을 부과하는 등 [별표 3] "세외수입 사망자 부과취소 대상 명세"와 같이 82건 28,146천원을 사망자에게 잘못 부과하였고, 2021. 9. 7.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취소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무안군은 세외수입의 징수 및 체납관리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저해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무안군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조속한 시일에 감사결과를 검토하여 대체압류, 결손처분, 부과취소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무안군수**는 체납자 재산이 발견된 76건(18,886,910원)을 압류

조치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105건(30,439,310원)에 대해서 결손처분하며, 사망자에게 잘못 부과한 과태료 82건(28,146,720원)을 부과취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3] 생 략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세입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무안군(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내　　용

1. 업무개요

무안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5조에 따라 세입계좌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고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 사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치·관리하고 있다.

2.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조치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1]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 제77조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반환을 받고자 할 때는 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다.

---

1)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금,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그리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출납원이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납입된 금액 중[2] 보관금 등의 보관시기가 경과되었을 때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에게 보증금 등 반환청구 가능 사실을 채권 소멸시효 완성 1개월 전에 1회 이상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 후에도 위 반환청구자로부터 보증금 등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출납원은 반환기간 5년이 경과한 보증금 등을 군 세입에 편입시켜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세무회계과)은 2021. 9. 7. 감사일 현재 [별표] “보관기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미처리 명세”와 같이 반환기간 5년이 경과한 보관금 등 18건 79,611천원에 대하여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에게 채권 소멸시효 완성 1개월 전 반환청구 가능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해당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방치하여 세입처리 않는 등 사실상 지방세입을 누락하고 있다.

그 결과 반환기간 5년이 경과한 보관금 등이 지방세입으로 편입되지 못하여 부족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하였다.

3. 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 과다 지출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업자(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7조 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보수월액 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그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 제외

따라서 무안군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소속 직원(계약직 포함)에게 급여를 지급할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보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금이 발생하면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수령하여 해당 대상자들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자치행정과)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표] "건강보험 예산 과다 지출 현황"과 같이 소속 직원의 환급액이 발생하면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서 지급하지 않고 급여예산에서 지급하였다.

그로 인하여 무안군은 소속직원에 대한 건강보험 환급금 85,599천원(2020. 12. 16. 기준 추정금액)이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건강보험 예산 과다 지출 현황

(단위: 원)

구분	공단 통보 납입고지금액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잔액 (매년 12. 16.기준)
	계	개인부담금(A)	기관부담금(B)	
2020년	4,154,231,310	2,096,554,300	2,057,677,010	85,599,050
2019년	3,609,408,990	1,825,003,000	1,784,405,990	44,434,820
2018년	3,113,999,840	1,572,451,370	,541,548,470	22,380,790
2017년	2,541,116,920	1,284,479,600	1,256,637,320	5,879,710
2016년	2,560,846,730	1,294,442,880	1,266,403,850	10,257,560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무안군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조속한 시일에 감사결과를 검토하여 세입 및 반환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무안군수**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서 반환기간이 경과한 79,611,796원 및 건강보험료 환급금 85,599,050원을 세입 및 반환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폐수도계량기 관리 및 매각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무안군(상하수도사업소)

내 용

1. 업무개요

무안군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군민의 원활한 수돗물 급수공급을 위해 급수공사 대행업체[1)]를 통해 수도계량기(5,757개)를 설치 및 교체를 하였다.

2. 폐수도계량기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고, 물품관리관은 소속 관서의 공무원에게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무안군 물품관리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군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고,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사업소의 물품관리관은 사업소장, 물품출납원은 주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은 주무자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다.

---

1) 9개 업체(○○건설, ○○건설, ○○건설, ○○건설, ○○, ○○○○건설, ○○개발, ○○건설, ○○○○개발)

그리고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르면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사·반환·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조례 제24조에 따르면 물품출납원은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을 비치하여 물품의 입출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물품관리관으로, 주무팀장을 물품출납원으로, 담당자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지정하고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물품수불(관리)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여 폐수도계량기의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상하수도사업소)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폐수도계량기에 대한 물품수불(관리)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여 폐수도계량기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표 1] “폐수도계량기 발생 및 매각 현황”과 같이 폐수도계량기 336개만 사업소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 1,712개는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등 폐수도계량기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운영·관리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폐수도계량기 발생 및 매각 현황(2018.10월~2021.7월)

(단위 : 개)

연도	발생량 (교체수량)	매각량	잔여량	보관량	부족량
계	3,294	1,246	2,048	336	1,712
2018년	1,034		1,034		
2019년	365		365		
2020년	1,603	1,246	357		
2021년 7월까지	292		292	336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3. 폐수도계량기 매각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르면 불용품을 일반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고,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되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은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무안군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되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불용품을 매각하려는 경우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하고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산정한 후 일반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연 2회 이상 불용품을 매각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상하수도사업소)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불용품을 2018년과 2019년에는 단 한차례도 매각하지 않았고, 2020년에는 [표 2] “폐수도계량기 등 불용품 매각 현황”과 같이 폐수도계량기를 매각하면서 군수의 결재 없이 불용결정을 하였다.

또한 불용품을 매각하면서 불용품에 대한 예정가격을 산하지 않은 채 정당

한 계약절차 없이 1곳의 폐기물업체에 개당 2,000원에 1,246개를 매각하였다.

[표 2] 폐수도계량기 등 불용품 매각 현황(2020년)

(단위 : 개, 원)

연번	매각일자	매각업체	매각수량	매각금액
		1곳	1,246	2,492,000
1	2020.03.17.	○○○○	405	810,000
2	2020.07.29.		491	982,000
3	2020.09.29.		350	700,000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폐수도계량기를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무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무안군수는** 폐수도계량기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물품수불(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시고, 보관 중인 폐수도계량기는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매각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 라 남 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차고지 및 유가보조금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무안군(건설교통과)

훈 계 대 상 자 무안군 ○○면 지방○○서기 ○○○

내 용

1. 업무개요

무안군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법령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유가보조금 지원·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지방○○서기 ○○○은 2020.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유가보조금 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차고지 설치기간이 도과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차고지가 자기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신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차고지 등이 확보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

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 2. 개별기준 제4호에 따라 1차 사업전부 정지(30일), 2차 허가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차고지 설치기간이 도과되면 차고지 설치기간 만료 또는 연장 안내를 하고 차고지 설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건설교통과)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표] "차고지 설치기간 도과 현황"과 같이 총 5명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최소 42일에서 최대 975일(약 2년 8개월)까지 차고지 설치기간이 도과되었는데도 2021. 9. 7. 감사일 현재까지 차고지 설치기간 만료 또는 연장 안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표] 차고지 설치기간 도과 현황(2018.10월~2021.7월)

(단위 : ㎡, 일)

연번	상 호	차고지 면적 (㎡)	차고지 설치기간	도과일
1	(유)○○○○	1,000	2016.05.20.~2021.05.19.	104
2	○○○	32	2016.07.20.~2021.07.20.	42
3	○○○	10	2016.12.28.~2018.12.30.	975
4	○○○	40	2018.07.13.~2020.07.12.	415
5	○○○	40	2018.06.14.~2019.06.13.	810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법령 취지가 훼손되고 차고지외 주차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초래되었다.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여객자동차 운

송사업자 등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 자동차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제22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는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사용량 보다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다른 사람 또는 업체가 구입한 연료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등을 포함하여 총 10가지[2]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제23조에 따라 상기 사항에 해당되어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1차 위반 6개월, 2차 이상 위반 1년) 및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건설교통과)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역평균거래량 2배 충전, 2시간 이내 80리터 초과 충전, 1회 72리터 초과 충전, 1일 120리터 초과 충전, 사업 구역 외 충전 등 부정 수급으로 의심되는 거래 내역이 있으면 이를 조사하여 부정수급으로 확인 될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 정지 등 여객

---

2)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사용량보다 부풀여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2.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3. 다른 사람 또는 업체가 구입한 연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4. 실제 주유·충전 받은 유종과는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5. 택시인 경우 부제일에 주유(충전) 받는 행위. 다만, 차량 출고, 가스용기 수리 및 교체, 비상수송대책 등을 이유로 관할관청에서 부제를 해제한 경우 등 실제 운송사업용으로 유류를 사용한 경우 및 부제시작 후 다음 영업 준비를 위해 주유(충전)하는 경우로서 택시의 부제일 총 운행거리가 20km이내(관할관청에서 택시의 사업구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km이내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총 운행거리)인 경우 등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제24조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하는 행위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의2 및 94조의3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9.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10. 제16조 제2항 나목에 따른 거래내역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별표 1]에서 [별표 5]까지의 "여객자동차 유형별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명세"와 같이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1일 120리터 초과 충전 13건, 사업구역 외 충전 218건, 지역거래량 2배 초과 충전 50건 등 총 283건의 부정 수급이 의심된다는 내역이 확인되었는데도 2021. 9. 7. 감사일 현재까지 단 한건의 사실 확인 및 행정상 제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가능하도록 방조함으로써 보조금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유가보조금 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실추시켰다.

관계기관 의견 무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무안군수는**

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서기 ○○○을 훈계하고**(훈계)**

② 차고지 설치기간 도과 내역 건(5건)과 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거래 내역 건(283건 17,979,830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유가보조금 환수, 지급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표 1] ~ [별표 5] 생 략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지연배상금 산정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무안군(세무회계과, 체육시설사업소,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내　　용

1. 업무개요

무안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에 따라 계약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10일 이상 지연배상금을 부과한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지연배상금 산정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무안군은 2019. 7. 17.부터 2021. 4. 1.까지 “현경 오류지구 대형저류조 설치공사” 등 5건을 195,828천원에 계약 체결하였다.

「지방계약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고, 지연배상금률은 공사의 경우 1000분의 0.5, 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로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 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7절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준공기한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그 지체일수마다 지연배상금률 1000분의 0.5(용역의 경우 1000분의 1.3)를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세무회계과)은 2020. 5. 28. “○○ ○○지구 ○○○○○ 설치공사” 지연배상금 산정 시 2019. 6. 29. 기성금(35,687,99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이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기성금 지급액을 제외하였다.

또한 2020. 6. 1. “무안 ○○○ ○○의 숲 조성사업 소방공사”의 경우 선금 지급액을 제외하고 지연배상금을 산정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도 선금 지급액(19,030,000원)을 제외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등 2019년부터 2021. 9. 7. 감사일 현재까지 기성금, 선금 등 기지급한 대금을 제외하고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표 1] “지연배상금 과소 부과·징수 현황”과 같이 지연배상금 총 5건, 12,159천원을 과소 부과·징수하였다.

[표 1] 지연배상금 과소 부과·징수 현황(2019~2021.7월)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계약금액	준공기한	준공검사일	지연일수	지연배상금		
						징수액 (A)	재산정액 (B)	과소 부과·징수액 (B-A)
계	5건	195,826				3,739	15,898	12,159
공사	○○ ○○지구 ○○○○○ 설치공사	39,991	2019.00.00.	2020.00.00.	295	373	5,637	5,264
공사	무안 ○○○ ○○의 숲 조성사업 소방공사	63,505	2019.00.00.	2020.00.00.	150	3,023	4,450	1,427

구분	사업명	계약 금액	준공기한	준공검사일	지연 일수	지연배상금		
						징수액 (A)	재산정액 (B)	과소 부과·징수액 (B-A)
용역	○○의○○만들기사업장 사후관리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사업 실시 설계용역	10,751	2020.00.00.	2020.00.00.	10	98	140	42
용역	○○ ○○사무소 내진 보강공사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26,964	2020.00.00.	2020.00.00.	20	245	701	456
용역	○○ ○○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54,615	2021.00.00.	2021.00.00.	70	0 (감사일 현재 미부과)	4,970	4,970

제출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3.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무안군은 2020. 5. 28. “○○ ○○지구 ○○○○○ 설치공사” 등 2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가 준공기한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하여 [표 2]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현황”과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였다.

[표 2]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현황

(단위 : 천원)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공사기간	준공검사일	지연배상금 부과일수	부과일
○○ ○○지구 ○○○○○ 설치공사	(주)○○건설	39,991	2019.00.00.~2019.00.00.	2020.05.08.	295일	2020.05.28.
○○의○○만들기사업장 사후관리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사업 실시 설계용역	○○○○개발 (주)	10,751	2020.00.00.~2020.00.00.	2020.04.13.	10일	2020.04.13.

제출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르면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등으로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

과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등 수의계약 배제대상 업체와는 3개월 간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세무회계과, 체육시설사업소,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은 2020.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10일 이상 지연배상금을 부과한 해당 업체가 수의계약 배제 대상 업체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표 3] “수의계약 배제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현황”과 같이 해당 업체의 수의계약 배제기간 동안 3건, 33,938천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수의계약 배제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천원)

계약부서명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	3건			33,938
세무회계과	○○○○ 앞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개발(주)	2020.00.00.	7,064
체육시설 사업소	무안○○○○○ ○○○야구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개발(주)	2020.00.00	18,414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	○○○○○ ○○광장 돌담길 정비	(주)○○건설	2020.00.00.	8,460

제출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무안군은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있는 업체에게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무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무안군수**는 앞으로 지연배상금이 과소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10일 이상 지연배상금을 부과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전시물 설계 등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무안군(관광과, 생태갯벌사업소, 세무회계과)

내　　용

1. 업무개요

무안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에 따라 전문성, 기술성 등이 필요한 물품, 용역 계약 이행의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와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공사, 용역, 물품이 혼재된 사업의 계약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 이라 한다)에 따르면 공사, 용역, 물품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분할발주 여부와,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법령 준수 여부,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 시장의 경쟁제한 효과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예산절감과 공정한 경쟁, 그리고 최적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는 계약 방법 등을 검토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물품과 용역에 한하여 체결하고, 계약 목적물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등의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관광과, 생태갯벌사업소)은 2019. 2. 15.부터 2020. 6. 2.까지 [표 2]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사업 공정별 현황"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사업별 공정 세부 명세"와 같이 전시물 설계용역, 전시시설 설치, 전시물 제조가 혼재된 계약목적물에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닌 공사 비율이 최소 31.4%에서 최대 43.8%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위 사업 전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표 2]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사업 공정별 현황(2019.2.15.~2020.6.2.)

(단위 : 천원)

구분	공정별			
3건	계	공사	용역	물품
전통 ○○○○ ○○○○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 설치	100%	31.4%	10.4%	58.2%
무안○○○○○○○ 상설전시 제작 설치	100%	33.6%	24.9%	41.5%
무안○○○○ ○○○○ 국가중요○○○○관 제작설치	100%	43.8%	35.4%	20.8%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닌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부적정하게 추진하여 계약법령의 취지를 훼손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에 따라 과도하게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사례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6항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종합공사의 경우 해당 계약 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특수한 공법 등이 꼭 필요한 공사 외에는 동일 실적과 지역제한 등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거나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적용하는 등 과도하게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을 허용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관광과, 생태갯벌사업소)은 2019. 2. 15. 실제 사업 내용이 전시물 설계용역, 전시시설 설치, 전시물 제조가 혼재된 전통 ○○○○ ○○○○(추정가격 1,455백만원)와 2019. 6. 27. 무안○○○○○○○ 상설전시 제작설치사업(추정가격 3,455백만원) 등 전시시설물 설계 및 제작설치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서 입찰참가 자격을 ①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② 산업디

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 또는 환경디자인 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③ 직접생산 증명서(실물모형) 소지한 업체 ④ 비디오물 제작 신고업체이거나 소프트웨어 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업)로 신고 필한 업체 ⑤ 전시물 제작·설치 준공실적이 최근 5년 이내 단일 사업 10억원 이상 등 총 5개의 입찰 참가자격을 요구하고 공동수급을 제한하는 입찰공고문을 작성하여 계약부서에서 계약 의뢰하였다.

또한 계약부서인 세무회계과는 다수의 등록·면허·자격·실적 요건으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해당 공고문을 면밀한 검토 없이 2020. 4. 28. 등 3회에 걸쳐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공고 하였다.

그로 인하여 한 업체가 보유하기 곤란한 5개의 입찰 참가자격 부여는 입찰을 통해 다수의 업체가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하는 「지방계약법」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표 3] “입찰참가자격 관련 도내 업체 현황”과 같이 도내 다수업체의 입찰참가가 배제된 채 최소 1개에서 최대 5개까지의 업체만 참가하여 경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다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아 입찰 참가 업체 수를 크게 제한되는 등으로 동종업계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잃게 하는 등 지방계약 행정의 신뢰 훼손을 초래하였다.

[표 3] 입찰참가자격 관련 도내 업체 현황

구 분	직접생산 증명서 (실물모형 6010989901)	산업디자인 (환경・종합)	비디오물제작신고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업)	실내건축공사업
업체 수 (개)	114	216 (환경 179 종합 37)	128	656	286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무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무안군수**는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 추진 시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 [별표 3] 생　략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사회보장급여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무안군(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건축과)

내　　용

1. 업무개요

무안군은 관내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지급 및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아동수당·가족양육수당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아동수당법」 제4조, 제13조 및 제16조, 보건복지부「아동수당사업안내」 제6편 수급자관리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되,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보건복지부「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및 보건복지부「보육사업안내」 Ⅸ. 보육 예산지원(보육료·가정양육수당)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하되,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수급 아동과 영유아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주민생활과)는 2018. 10월부터 2021. 7월까지 [표 1] "아동수당 및 가정양육수당 과다 지급 현황"과 같이 90일 이상 국외체류 대상자인 ○○면 ○○○ 등 5명에게 1,150,00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1] 아동수당 및 가정양육수당 과다 지급 현황(2018.10월~2021.7월)

(단위 : 명, 원)

구분	읍면동	성명	생년월일	출국일자	90일 시점	과다 지급		
						지급기간	개월수	금액
계		5명						1,150,000
아동수당	○○면	○○○	2018.00.00.	2019.04.07.	2019.07.06.	2019.08~09	2	200,000
	○○읍	○○○	2017.00.00.	2018.12.14.	2019.03.14.	2019.04~06	3	300,000
	○○읍	○○○	2017.00.00.	2019.06.23.	2019.09.21.	2019.10	1	100,000
가정양육수당	○○읍	○○○	2017.00.00.	2018.12.14.	2019.03.14.	2019.04~06	3	450,000
	○○읍	○○○	2017.00.00.	2019.06.23.	2019.09.21.	2019.10	1	100,000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신규 기초연금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기초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을 등을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최장 60일)이내에 가구별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요건을 확인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

람에 대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주민생활과)은 2018. 10월부터 2021. 7월까지 기초연금 수급자 중 ○○면에 거주하는 ○○○ 등 3명에게 [표 2] "신규 기초연금 과소 지급 현황"과 같이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3개월분 592,500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표 2] 신규 기초연금 과소 지급 현황(2018.10월~2021.7월)

(단위 : 명, 원)

연도	주 소 (읍면동)	대상자	생년월일	최 초 신청일	월 지급액	최 초 지급일	총 지급액	과소 지급	
								개월	금액
계		3명							592,500
2019	○○면	○○○	1954.00.00.	2019.04.18.	203,000	2019.06.25.	203,000	1	203,000
2020	○○읍	○○○	1955.00.00.	2020.09.29.	65,840	2020.11.25.	152,120		45,400
2021	○○읍	○○○	1950.00.00.	2021.03.31.	114,700	2021.06.25.	114,700	3	344,100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급 부적정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실제소득 미반영 지원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수급자는 소득·재산이 변동되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시장·군수는 매년 수급자에 대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수급자의 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각종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그 밖의 금품은 수급자의 실제소득[3]에 합산하도록 되어 있다.

3) '실제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받는 사적 이전소득, 각종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공적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또한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제3편 조사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자동연계[4]되지 않는 보훈명예수당, 지방자치단체 추가지원금, 이·통장 직책수당 등은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금액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수급자의 실제소득에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월 60,000원, 2021년부터 월 8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연 1회 이상 수급자의 소득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현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에 반영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사회복지과)은 2018. 10월부터 2021. 7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실제소득에 미산정하여 [표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과다 지급 현황"과 같이 ○○면에 거주하는 ○○○ 등 10명에게 생계급여 8,460,00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과다 지급 현황(2018.10월~2021.7월)

(단위: 원)

주 소 (읍면동)	성명	생년월일	지자체 지원금 지급 현황				과다 지급	
			구분	지급 개시	지급 최종	월 지급액	개월	금액
계	10명							8,460,000
○○면	○○○	1932.00.00.	참전명예수당	2018.10.	2021.06.	80,000	33	2,100,000
○○면	○○○	1950.00.00.	참전명예수당	2021.01.	2021.06.	80,000	6	480,000
○○읍	○○○	1932.00.00.	참전명예수당	2018.10.	2021.06.	80,000	33	2,100,000
○○읍	○○○	1947.00.00.	참전명예수당	2018.10.	2021.06.	80,000	33	2,100,000
○○읍	○○○	1946.02.05.	참전명예수당	2021.03.	2021.06.	80,000	4	320,000

4)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되어 수급자의 소득에 자동 반영되나, 지자체 지원금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되지 않아 별도의 조사 및 자료 입력 필요

주 소 (읍면동)	성명	생년월일	지자체 지원금 지급 현황				과다 지급	
			구분	지급 개시	지급 최종	월 지급액	개월	금액
○○읍	○○○	1946.00.00.	참전명예수당	2021.02.	2021.06.	80,000	5	400,000
○○읍	○○○	1933.00.00.	참전명예수당	2021.03.	2021.06.	80,000	4	320,000
○○면	○○○	1927.00.00.	참전명예수당	2021.03	2021.06.	80,000	4	320,000
○○면	○○○	1932.00.00.	참전명예수당	2021.05.	2021.06.	80,000	2	160,000
○○면	○○○	1928.00.00.	참전명예수당	2021.05.	2021.06.	80,000	2	160,000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신규 수급권자 생계급여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제4편 급여의 실시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복지급여 신청을 성실하게 하였음에도 보장기관이 반영을 누락하는 등 그 귀책사유가 보장기관에 있을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 이내에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복지급여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미지급된 급여는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주민생활과, 건축과)은 2018. 10월부터 2021. 7월까지 신규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된 ○○읍에 거주하는 ○○○에게 [표 4] “신규 생계급여 과소 지급 현황”과 같이 생계급여 248,350원을 과소 지급하였고, [표 5] “신규 주거급여 과소 지급 현황”과 ○○읍에 거주하는 ○○○ 등 52명에게 9,551,790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표 4] 신규 생계급여 과소 지급 현황(2018.10월~2021.7월)

(단위 : 명, 원)

연도	성명	주 소 (읍면동)	신청일	월 지급액	최초		과소 지급	
					지급일	지급액	개월	지급액
2021	○○○	○○읍	2021.06.25.	248,350	2021.07.20.	248,350	1	248,350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 5] 신규 주거급여 과소 지급 현황(2018.10월~2021.7월)

(단위 : 명, 원)

연도	성명	주 소 (읍면동)	신청일	월 지급액	최초		과소 지급	
					지급일	지급액	개월	지급액
계	52명							9,551,790
2018	○○○	○○읍	2018.08.16.	136,950	2018.10.19.	136,950	2	273,900
	○○○	○○읍	2018.08.17.	184,000	2018.10.19.	184,000	2	368,000
	○○○	○○읍	2018.08.21.	140,000	2018.10.19.	140,000	2	280,000
	○○○	○○읍	2018.08.21.	109,660	2018.10.19.	109,660	2	219,320
	○○○	○○읍	2018.08.17.	136,950	2018.10.19.	136,950	2	273,900
	○○○	○○읍	2018.08.20.	99,240	2018.10.19.	99,240	2	198,480
	○○○	○○읍	2018.08.16.	71,700	2018.10.19.	71,700	2	143,400
	○○○	○○읍	2018.08.13.	136,950	2018.10.19.	136,950	2	273,900
	○○○	○○읍	2018.08.13.	166,960	2018.10.19.	166,960	2	333,920
	○○○	○○면	2018.08.23.	108,340	2018.10.19.	108,340	2	216,680
	○○○	○○읍	2018.08.13.	84,000	2018.10.19.	84,000	2	168,000
	○○○	○○면	2018.08.13.	84,000	2018.10.19.	84,000	2	168,000
	○○○	○○읍	2018.09.03.	152,000	2018.10.19.	152,000	1	152,000
	○○○	○○읍	2018.08.22.	140,000	2018.10.19.	140,000	2	280,000
	○○○	○○읍	2018.08.28.	140,000	2018.10.19.	140,000	2	280,000
	○○○	○○읍	2018.08.27.	84,000	2018.10.19.	84,000	2	168,000
	○○○	○○읍	2018.08.17.	110,400	2018.10.19.	110,400	2	220,800
	○○○	○○읍	2018.08.23.	169,220	2018.10.19.	169,220	2	338,440
	○○○	○○읍	2018.08.28.	130,280	2018.10.19.	130,280	2	260,560
	○○○	○○읍	2018.08.23.	140,000	2018.10.19.	140,000	2	280,000
	○○○	○○면	2018.08.31.	140,000	2018.10.19.	140,000	2	280,000
	○○○	○○읍	2018.09.03	130,440	2018.10.19.	130,440	1	130,440

연도	성명	주 소 (읍면동)	신청일	월 지급액	최초		과소 지급	
					지급일	지급액	개월	지급액
	○○○	○○읍	2018.08.29.	152,000	2018.10.19.	152,000	2	304,000
	○○○	○○읍	2018.09.07.	119,140	2018.10.19.	119,140	1	119,140
	○○○	○○읍	2018.08.17.	184,000	2018.10.19.	184,000	2	368,000
	○○○	○○읍	2018.08.21.	35,310	2018.10.19.	35,310	2	70,620
	○○○	○○면	2018.09.18.	152,000	2018.10.25.	152,000	1	152,000
	○○○	○○읍	2018.09.14.	103,490	2018.10.25.	103,490	1	103,490
	○○○	○○읍	2018.09.10.	103,490	2018.10.25.	103,490	1	103,490
	○○○	○○읍	2018.09.11.	140,000	2018.10.25.	140,000	1	140,000
	○○○	○○읍	2018.08.23.	56,770	2018.10.25.	56,770	2	113,540
	○○○	○○읍	2018.09.21.	122,790	2018.10.25.	122,790	1	122,790
	○○○	○○읍	2018.09.27.	103,490	2018.10.25.	103,490	1	103,490
	○○○	○○읍	2018.09.10.	104,520	2018.10.25.	104,520	1	104,520
	○○○	○○읍	2018.09.06.	136,950	2018.10.25.	136,950	1	136,950
	○○○	○○읍	2018.09.05.	140,000	2018.10.25.	140,000	1	140,000
	○○○	○○읍	2018.09.03.	190,900	2018.10.25.	190,900	1	190,900
	○○○	○○읍	2018.09.11.	123,690	2018.10.25.	123,690	1	123,690
	○○○	○○읍	2018.09.11.	86,490	2018.10.25.	86,490	1	86,490
	○○○	○○읍	2018.09.27.	140,000	2018.10.25.	140,000	1	140,000
	○○○	○○읍	2018.09.02.	152,000	2018.10.25.	152,000	1	152,000
	○○○	○○면	2018.09.17.	84,000	2018.10.25.	84,000	1	84,000
	○○○	○○읍	2018.09.19.	184,000	2018.10.31.	184,000	1	184,000
	○○○	○○읍	2018.08.31.	84,000	2018.11.20.	168,000	2	168,000
	○○○	○○면	2018.09.17.	84,000	2018.11.20.	168,000	1	84,000
	○○○	○○면	2018.09.05.	84,000	2018.11.20.	168,000	1	84,000
	○○○	○○읍	2018.09.28.	64,530	2018.11.20.	129,060	1	64,530
2019	○○○	○○읍	2019.07.25.	51,360	2019.09.20.	102,720	1	51,360
2021	○○○	○○읍	2020.11.25.	130,200	2021.01.20.	260,400	1	130,200
	○○○	○○읍	2021.01.12	107,730	2021.02.25.	107,730	1	107,730
	○○○	○○읍	2021.03.29.	157,760	2021.05.20.	157,760	2	315,520
	○○○	○○읍	2021.04.05.	97,800	2021.07.20.	195,600	2	195,600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5.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장애인연금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을 지급할 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사회복지과)은 2018. 10월부터 2021. 7월까지 신규 장애수당 수급자로 결정된 ○○면 ○○○ 등 9명에게 [표 6] "신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과소 지급 현황"과 같이 2,240,000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표 6] 신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과소 지급 현황(2018.10월~2021.7월)

(단위 : 명, 원)

사업구분	연도	대상자	주 소 (읍면동)	최초 신청일	월 지급액	최초지급		과소 지급	
						지급일	지급액	개월	지급액
계		9명							2,240,000
장애인연금	2019	○○○	○○면	2019.02.21.	40,000	2019.05.20.	40,000	3	120,000
	2020	○○○	○○읍	2020.02.11.	370,000	2020.04.20.	740,000	1	370,000
		○○○	○○읍	2020.02.11.	370,000	2020.04.20.	740,000	1	370,000
	2021	○○○	○○읍	2021.05.14.	380,000	2021.07.20.	380,000	2	760,000
장애수당	2019	○○○	○○면	2019.01.24.	40,000	2019.04.19.	40000	3	120,000
		○○○	○○면	2019.10.01.	40,000	2019.11.20.	40000	1	40,000
	2020	○○○	○○읍	2020.04.22.	40,000	2020.07.20.	40000	3	120,000
	2021	○○○	○○면	2021.06.16.	40,000	2021.07.20.	40000	1	40,000
장애아동수당	2019	○○○	○○읍	2019.05.20.	150,000	2019.08.20.	300,000	2	300,000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신규 장애수당 수급자로 결정된 ○○면 ○○○ 등 3명에게 [표 7] "신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과다 지급 현황"과 같이 180,00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7] 신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과다 지급 현황(2018.10월~2021.7월)

(단위 : 명, 원)

사업구분	연도	대상자	주 소 (읍면동)	최초 신청일	월 지급액	최초지급		과다 지급	
						지급일	지급액	개월	지급액
계		3명							180,000
장 애 수 당	2020	○○○	○○읍	2019.12.09.	40,000	2020.02.20.	160000	1	40,000
장 애 수 당	2021	○○○	○○읍	2020.11.27.	40,000	2021.01.20.	160000	1	40,000
장애아동수당	2019	○○○	○○면	2019.03.05.	100,000	2019.04.19.	300,000	1	100,000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6. 긴급지원사업(의료지원) 진료비 부당청구 확인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제3편에 따르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의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에 의료지원을 할 수 있고, 의료지원 금액 중 비급여 진료비 지원 금액이 150만원 이상(2020. 7. 31.부터 200만원 이상[5])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진료비 외의 부당청구 여부 등확인을 위하여 시·군은 긴급의료지원 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을 하여 환불금이 발생하는 경우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비급여 진료비 지원 금액이 150만원 이상(2020. 7. 31.부터 200만원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부당청구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5) 도 사회복지과-000004(2020.00.00.), 00000(2020.00.00.), 0000(2021.00.00.) 확인요청액 200만원 상향(시행일 2020.7.31.부터 2021.6.30.까지)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사회복지과)은 2018. 10월부터 2021. 7월까지 긴급지원사업(의료지원)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150만원 이상(2020. 7. 31.부터 200만원 이상) 지원한 24건(56,902,262원) 중 5건(13,737,910원)은 확인 요청을 하여 2건(72,890원)이 부당청구 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표 8] "부당청구 확인 요청 미실시 현황"과 같이 19건(43,164,352원)에 대하여 일체 확인 요청을 하지 않아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긴급지원사업(의료지원) 비급여 진료비 심사 청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8] 부당청구 확인 요청 미실시 현황(2018.10월~2021.7월)

(단위 : 명, 원)

연도	성명	주소(읍면동)	지원일	비급여 지원액
	19명			43,164,352
2019년	○○○	○○읍	2019.01.29.	2,446,830
	○○○	○○면	2019.01.31.	2,720,470
	○○○	○○읍	2019.02.11.	1,631,350
	○○○	○○면	2019.03.18.	1,648,217
	○○○	○○면	2019.03.19.	2,988,458
	○○○	○○읍	2019.05.29.	1,519,980
	○○○	○○면	2019.07.12.	1,645,772
	○○○	○○읍	2019.07.30.	2,995,270
	○○○	○○면	2019.10.14.	2,922,164
2020년	○○○	○○읍	2020.01.06.	2,011,373
	○○○	○○읍	2020.01.06.	3,000,000
	○○○	○○읍	2020.01.10.	2,040,660
	○○○	○○읍	2020.01.21.	3,000,000
	○○○	○○면	2020.02.20.	3,000,000
	○○○	○○읍	2020.03.18.	1,527,053
	○○○	○○면	2020.03.20.	1,705,340
	○○○	○○읍	2020.03.10.	1,646,769
	○○○	○○읍	2020.05.08.	3,000,000
	○○○	○○면	2020.05.18.	1,714,646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과다 지급은 수급자에 대한 형평성을 훼손하고, 과소 지급은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긴급의료지원 비급여 진료비 부당청구 미확인은 부당이익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무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무안군수**는 수급자 65명에게 과소 지급된 생계·주거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장애수당 12,632,640원을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18명에 대하여 9,790,000원을 회수하며, 긴급의료비 부당청구 확인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보장급여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 라 남 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무안군○○회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무안군(문화체육과)

훈 계 대 상 자 ① 무안군 ○○○○과 지방○○사무관 ○○○

② 무안군 ○○읍 지방○○사무관 ○○○

내 용

1. 업무 개요

무안군은 관내 전문체육 활성화 및 선수육성,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체력증진 등을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무안군○○회에 운영비 472,609천원[1]을 지원하였다.

지방○○사무관 ○○○은 2018. 00. 00.부터 2020. 00. 00.까지, 지방○○사무관 ○○○은 2020.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무안군○○회 보조금 지원 등 업무전반을 관리하는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2. 보조금 관리·감독 부적정

가. 관계 법령(관련 근거)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1) (2018년) 92,520천원, (2019년) 97,689천원, (2020년) 150,000천원, (2021년) 132,400천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26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 사용,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 등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매년 지원되는 무안군체육회 운영 보조금을 관계 법령 및 사업목적과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지도·감독하고, 보조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을 경우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등에 대하여 반환명령 및 반환받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문화체육과)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무안군○○회가 [별표] “무안군○○회 운영비 지출 부적정 명세”와 같이 ○○○ ○○○○비 등 50건, 34,376,950원의 보조금을 사업 목적 외 사용하였는데도 보조금 정산처리 등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했으며 예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3. 회계담당자 재정보증보험 가입 등 부적정

가. 관계 법령(관련 근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및 제3조에 회계관계직원이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공무원 등 그 밖에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을 말하고, 회계관계 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르면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무안군○○회에 지원된 보조금의 세입·세출 등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 책임한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관직 규정에 따라 재무관, 지출원 등 회계관직을 지정·운영하고, 재정보증을 가입한 후에 회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문화체육과)은 2018년부터 2021. 7월까지 [표] “무안군○○회 사무국 회계관직 지정·운영 및 재정보증 미가입 현황”과 같이 군 ○○회가 회계관직(경리관, 분임경리관, 지출원) 등 지정·운영을 전혀 하지 않고, 회계담당자 등의 재정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영비 등을 집행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표] 무안군○○회 사무국 회계관직 지정·운영 및 재정보증 미가입 현황(2018~2021.7월)

명칭	직급(직위)	성명	담당업무	회계관직	재정보증 가입여부	운영보조금 (2018~2021)
무안군 ○○회	회장	○○○		없음	부	472,609천원
	사무국장	○○○	사무국총괄	〃	부	
	사무과장	○○○	기획, 관리	〃	부	
	행정팀장	○○○	집행, 정산	〃	부	
	매니저	○○○	행정지원	〃	부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회계관직을 지정받지 않은 자가 회계업무를 처리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회계사고 발생 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무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무안군수**는

① 무안군체육회 운영 보조금 지원 관리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지방○○사무관 ○○○과 지방○○사무관 ○○○을 훈계하고(**훈계**)

② 무안군○○회 운영 지원 보조금 중 사업목적 외 부당 사용한 34,376,950원은 회수하며, 군 ○○회 회계관직 지정 및 회계담당자 등을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전 라 남 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선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무안군(해양수산과)

훈 계 대 상 자 무안군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 개요

무안군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하고 있다.

지방○○○○주사 ○○○은 2019.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선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는 어업생산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 행정처분(시정명령) 이행확인 부적정

가. 관계 법령(관련 근거)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 Ⅱ항 2호 가목에 따르면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어업 또는 어획물 운반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어업등 행정처분이나 해기사 행정처분의 요구는 청문을 실시한 날 또는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경고처분은 경고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하되 기한을 정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르면 제6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한은 30일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8조 제5항에 시정명령을 이행한 자는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완료 통보서에 증명서류와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행정청은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1차 위반은 경고처분하고, 30일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완료 통보서와 증명서류 등을 제출받아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해양수산과)은 [표 1] “휴업 미신고 무조업어선 행정처분 현황”과 같이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8. 5. 25.부터 2019. 5. 24.까지 1년 이상 무조업 위반으로 적발되어 2020. 2. 26. 1차 행정처분(경고 및 시정명령) 하였는데도 해당 어업인으로부터 기한 내에 시정완료 및 시정완료 통지서를 접수받지 않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행정처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1] 휴업 미신고 무조업어선 행정처분 현황

연번	어선명	어선번호	어업허가	성 명	위반내용	행정처분 (처분일)
1	○○○호	9804111-0000000	연안복합 2019-000	○○○	휴업 미신고 무조업어선 (수산업법 제30조 위반)	경고 (2020.2.26.)
2	○○○2호	9606021-0000000	연안통발 2019-000	○○○	휴업 미신고 무조업어선 (수산업법 제30조 위반)	경고 (2020.2.26.)
3	○○호	1604003-0000000	연안복합 2019-000	○○○	휴업 미신고 무조업어선 (수산업법 제30조 위반)	경고 (2020.2.26.)
4	○○호	0806008-0000000	연안복합 2019-000	○○○	휴업 미신고 무조업어선 (수산업법 제30조 위반)	경고 (2020.2.26.)
5	○○호	9812005-0000000	연안복합 2019-000	○○○	휴업 미신고 무조업어선 (수산업법 제30조 위반)	경고 (2020.2.26.)
6	○○호	0609002-0000000	연안자망 2019-000	○○○	휴업 미신고 무조업어선 (수산업법 제30조 위반)	경고 (2020.2.26.)
7	○○호	0407006-0000000	연안복합 2019-000	○○○	휴업 미신고 무조업어선 (수산업법 제30조 위반)	경고 (2020.2.26.)
8	○○호	0110010-0000000	연안복합 2019-000	○○○	휴업 미신고 무조업어선 (수산업법 제30조 위반)	경고 (2020.2.26.)
9	○○호	0507008-0000000	연안통발 2019-000	○○○	휴업 미신고 무조업어선 (수산업법 제30조 위반)	경고 (2020.2.26.)
10	○○호	9707001-0000000	연안복합 2019-000	○○○	휴업 미신고 무조업어선 (수산업법 제30조 위반)	경고 (2020.2.26.)
11	○○호	0210002-0000000	연안복합 2019-000 연안자망 2019-000	○○○	휴업 미신고 무조업어선 (수산업법 제30조 위반)	경고 (2020.2.26.)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3. 불법어업 어선 행정처분 부적정

가. 관계 법령(관련 근거)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르면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어업 외의 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 Ⅱ항 2호 가목에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해당 어업 외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1차 위반은 어업정지 60일, 2차 위반은 어업정지 90일, 3차 위반은 어업허가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에 행정관청은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별표 5] 과징금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에 따르면 모든 연안어업은 어업정지 1일당 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해당 어업 외의 어업을 한 어선에 대하여 1차 위반은 어업정지 60일, 2차 위반은 어업정지 90일, 3차 위반은 어업허가 취소하여야 하고,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1차 위반은 어업정지 1일당 6만원을 환산하여 총 360만원을 부과하여야 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해양수산과)은 2020. 9. 18. 어업정지와 과징금을 같이 처분할 수 없는데도 [표 2] “부적정 행정처분 현황”과 같이 어업정지 30일과 과징금 90만원으로 병과하여 행정처분을 하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2] 부적정 행정처분 현황

허가사항	위반일자	선명	허가자	위반내용	행정처분
연안통발 2019-000	2020.00.00.	○○호	○○○	허가받은 어업 외의 어업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	어업정지 30일 과징금 900,000원(1/2감경) 병과 (2020.09.18.)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행정의 신뢰 하락과 어업질서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무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무안군수**는

①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선 행정처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지방○○○○주사 ○○○을 훈계하고(**훈계**)

② 1차 행정처분에 따라 해당 어업인의 시정명령 이행 및 시정완료통지서를 접수받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사후관리 등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무안군(농정과, 무안읍, 일로읍, 삼향읍, 청계면, 현경면, 망운면, 해제면, 운남면)

내　　용

1. 업무 개요

무안군은 농업법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영농계획서를 검토하고 신청농지에 대해 현지 확인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2.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사후관리 소홀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농지법」 제3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대하여 확인과 심사를 할 경우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농업경영을 위장할 목적으로 취득 농지에 수목·묘목 등 다년생식물 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농업법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시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 상 목적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서 정한 사업범위[1]를 벗어나면 해당 법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 실시로 투기 등 매매거래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자격증명을 발급하며, 이 경우 농지의 소유권 취득 전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11조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을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부동산 매매업 등 사업범위 외 사업이 명시된 농업법인에 대하여는 농지의 소유권 취득 전 등기사항을 변경하였는지를 일정 기간을 두고 행정정보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매년 실시하는 농지 이용실태조사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의 소유권 취득 전 등기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는지 확인 후 고발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무안읍 등 8개 읍면)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면서 [별표 1] “농지 취득한 농업법인 등기사항을 미변경한 법인 명세”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유)○○ 등 29개 법인이 82필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고 농지 소유권 취득 전 등기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2021. 9. 7.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범위 외 사업이 등기상 포함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3. 농업법인 취득 농지 이용실태조사 소홀

1) (영농조합법인 사업범위)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농지법」 제10조에 따르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군수와 읍·면장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을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기준은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최근 5년 이내 취득한 농지가 조사 대상이며, 작물 재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고 투기목적 농지의 조사 등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르면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농업법인이 최근 5년 이내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이용실태 조사 또는 투기목적 농지 취득이 의심이 될 경우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농업경영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농정과, 무안읍 등 6개 읍면)은 2018년 이후 농업법인이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취득 이후 5년간 이용 실태 조사를 하여야 하는데도 매년 실시하지 않았고, 2021. 9. 3. 감사 기간 중에 45개 농업법인이 소유하면서 2021년 직불제 미신청 농지 65필지의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별표 2] “농업법인 농지취득 및 이용실태 명세”와 같이 (유)○○○○ 등 15개 법인의 19필지가 휴

경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농업경영보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 했다는 우려가 있는 농업법인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었고, 농지 이용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무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무안군수**는 부동산 매매업 등 목적외 사업을 포하하고 있는 농업법인에 대해서 등기사항을 변경하도록 하고, 휴경 등 농지 이용을 하지 않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청문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통지 및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2] 생 략

전 라 남 도
통보·시정요구

제 목 농업·기술지도 분야 민간보조사업 등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무안군(농정과, 농촌지원과, 친환경농업과)

내 용

1. 업무 개요

무안군은 지역 우수 농산물의 품질 향상, 경쟁력 제고 및 생산·유통·가공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2. 농업 시설물 공사·기계장비 구입 계약 부적정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13. 민간자본이전(402목) 편에 따르면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계약대상자 선정 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조금 교부조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등에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 공사, 그 밖의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1. 제한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① 동일실적 ② 기술의 보유상황 ③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④ 지역제한 ⑤ 설비제한 ⑥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⑦ 물품의 납품능력 ⑧ 중소기업자 ⑨ 벤처기업 ⑩ 소상공인 ⑪ 소기업 ⑫ 중소기업창업자 중에서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 제8조에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으면 계약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보조사업자가 2억원 이하 건설공사, 1억원 이하 전문공사, 8천만원 이하 그 밖의 일반공사 시공 업체 선정과 2천만원 이상 물품(용역) 구입 계약 체결 시 무안군에 계약 대행을 의뢰하도록 안내하거나 보조사업자가 직접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업체를 결정하되,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과도한 제한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농정과, 농촌지원과, 친환경농업과)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 등 12개 보조사업자가 계약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무안군에 계약 대행 없이 수의계약 체결하거나 나라장터가 아닌 민간 전용 전자조달시스템(이하 “누리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가) ○○○○ 등 8개 보조사업자의 경우

○○○○ 등 8개 보조사업자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표 1] “시설·장비 보조사업 수의계약 체결 현황”과 같이 기계장비와 시설공사를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 1] 시설・장비 보조사업 수의계약 체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사업 연도	사 업 명	보 조 사업자	사업내용	계약 금액	부적정 체결 사유
계		7개 사업	8개소		705,721	

구분	사업 연도	사 업 명	보 조 사업자	사업내용	계약 금액	부적정 체결 사유
1	2019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	○○○○	저온창고 리모델링 공사	150,105	나라장터 미이용 수의계약
2	2019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	○○○○조합법인	고구마 세척기	45,000	나라장터 미이용 수의계약
3	2019	○○○ 전과정 기계화 모델 구축사업	○○○○반	두둑형성기 등 5종	73,400	나라장터 미이용 수의계약
4	2020	농촌공동 ○○○○센터 운영지원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외부 리모델링	43,766	나라장터 미이용 수의계약
5	2020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융복합 강화 사업	○○○○○조합법인	체험활동 재배설비 공사	80,000	나라장터 미이용 수의계약
6	2020	농식품 제조업체 HACCP 시설 확충 지원사업	○○○○조합법인	HACCP시설 개보수	175,450	나라장터 미이용 수의계약
7	2020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 저감기술 시범사업	○○○○○○○ 연구소	에어포그 등 5종	100,000	나라장터 미이용 수의계약
8	2021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 장비 개선	㈜○○○	숙성탱크 2기 설치	38,000	나라장터 미이용 수의계약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나) (유)○○○○○○ 등 4개 보조사업자의 경우

(유)○○○○○○ 등 4개 보조사업자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표 2] “누리장터 이용 최저가 입찰 계약 체결 현황”과 같이 누리장터[1]를 통하여 입찰 공고를 하였고,「계약 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지역제한과 실적제한은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과도한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을 제한하고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기계장비·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 2] 누리장터 이용 최저가 입찰 계약 체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사업연도	사 업 명	보 조 사업자	사업내용	낙찰금액	참여 업체	과도한 입찰 참가 자격 조건
계		4개 사업	4개소		3,491,961		
1	2019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유)○○○○○○	농산물 창고 및 큐어링 시설	1,454,981	5개소	발주기관 지명통지 받은 업체만 입찰 참여 조건 부여
2	2019~2020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 조합법인	트랙터 구입	175,000	2개소	지역제한 (무안, 영광, 함평)

1) 조달청이 2015. 1. 5.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지 않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농업법인·비영리단체·중소기업 등 민간수요자가 조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한 시스템

구분	사업연도	사 업 명	보 조 사업자	사업내용	낙찰금액	참여 업체	과도한 입찰 참가 자격 조건
3	2019~ 2020	○○○○○ 사업 다각화사업	㈜○○	조사료 생산시설, 트랙터 등 14종	1,721,480	2개소	지역제한(영암,무안) 실적제한(강구조물 8억 이상 시공업체)
4	2020	식량작물○○○○○ 지원사업	㈜○○	육묘장 신축공사	140,500	2개소	현장설명 참가자, 지자체 등 660㎡ 이상 육묘장 단일시공 실적 요구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동종 업체의 참여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등 특정업체 특혜 제공과 부실 시공의 우려가 있게 하였다.

3. ○○○○○ 육성사업 등 중요 시설·장비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르면 중앙단위 사업이행 및 점검 의무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행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장비 등에 대해 관리 실태 및 사업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통해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농정과, 농촌지원과, 친환경농업과)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장비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현장점검 시 사업 목적대로 운영 사항 등을 파악하여 부서장에게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2018년 ○○○○○ 육성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표 3] “중요 시설·장비 지원사업 관리

실태 현황”과 같이 농기계 운영 실적, 배합기 사료 생산 실적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한 내용 없이 보유 장비 현황에 대해서만 결과 보고를 하였다.

이에 2021. 9. 2. 감사 기간 중에 2018년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등 2개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양파 정식기와 고구마 삽식기 등 활용 실적이 낮거나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도 그 사유를 확인하거나 시정 조치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3] 중요 시설·장비 지원사업 관리 실태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지원연도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내용	총 사업비 (보조금)	관리실태
계		8개 사업	6개소		5,321,112	
1	2018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	양파정식기 등 4종	239,370	시설·장비 유무만 확인 운영 실적 등 미확인
2	2019	○○○ 제조기술 시범사업	○○○	HACCP시설 리모델링 등	62,554	시설·장비 유무만 확인 운영 실적 등 미확인
3	2019~ 2020	○○○○○ 사업 다각화 지원	㈜○○	조사료 생산시설 등	1,721,480	시설·장비 유무만 확인 운영 실적 등 미확인
4	2019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	양파정식기 등	613,717	시설·장비 유무만 확인 운영 실적 등 미확인
5	2019	종자산업기반구축	○○○○	마늘선별기 등	764,705	시설·장비 유무만 확인 운영 실적 등 미확인
6	2019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	(유)○○○ ○○○	고구마 규어링 시설 등	1,729,286	시설·장비 유무만 확인 운영 실적 등 미확인
7	2019	가공유통 연계 ○○○ 전과정 기계화 구축사업	○○○○○	고구마 삽식기 등	100,000	시설·장비 유무만 확인 운영 실적 등 미확인
8	2020	농촌융복합산업인증경영체강화사업	○○○○○ 조합법인	버섯 체험장비 등	90,000	시설・장비 유무만 확인 운영 실적 등 미확인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4.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설치지원 사후관리 소홀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침에 따르면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 지원하고 비가림 시설 준공 이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목적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연작피해 방지 또는 가격 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로 1년간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시설 완공 후 6년까지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건고추 재배시기에 맞춰 보조사업자가 건고추를 재배하는지 준공 후 5년간 관리를 하여야 하고, 연작피해 방지 등으로 1년간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준공 후 6년간 관리하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친환경농업과)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82농가[2]에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하면서 고추 재배 기간인 6~8월에 점검을 하여야 하는데도 주 재배 시기가 아닌 기간에 점검계획을 통보[3]하여 관리하도록 하였고, 재배 사진 등 구체적으로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하지 않아 사후관리대장에 “이상없음”으로 관리하여 실질적으로 재배하였는지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없도록 관리 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고추 비가림 시설 준공 이후 5년간 건고추 재배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관리를 하지 않아 목적사업 달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사후관리 소홀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소관 사업시행지침」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에 따르면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가공·유통·수출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설·운영자금 형식으로 최소 1억원에서 최대 10억원 이내로 융자금[4]을 지원할수 있다고 되어 있다.

---

2) 2016년) 23농가, 2017년) 23, 2018년) 19, 2019년) 13, 2020년) 1, 2021년) 3

3) 친환경농업과-0000(2018.00.00.), 0000(2019.00.00.), 0000(2020.00.00.)

4) 농어업인 1억원 이내, 농어업법인 2억원,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5억원, 수출·가공·유통사업자 10억원

또한 융자금은 농지 구입, 시설하우스 등 시설자금과 포장디자인 개발, 품질 개선 등 운영자금으로 집행 할 수 있고, 지원 받은 융자금을 상환완료 이전에 사업자가 융자사업 목적을 포기하고 타 시도로 전출하거나 지원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지원된 융자금이 사업 계획대로 집행되었고, 융자금 상환완료 이전까지 융자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농정과)은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표 4]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지원 대상 및 실행인원 현황”과 같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대상자 122명 중 59명이 농지·한우·농기계 구입과 축사 등 시설 개보수 등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았는데도 융자금 상환 전까지 목적 사업 이행 여부 등 지원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2021. 9. 7. 감사일 현재까지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표 4]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지원 대상 및 실행인원 현황(2018~2021.9월)

(단위: 명, 백만원)

지원연도	지원인원	융자금 실행인원	주요사업	비 고
	122	59		
2018	6	3	농지구입, 농기계 구입 등	2018. 12. 31.
2019	27	11	농지구입, 농기계 구입 등	2019. 12. 31.
2020	42	15	농지구입, 농기계 구입 등	2020. 12. 31.
2021	47	30	한우 구입, 농지구입 등	2021. 09. 07.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지원 목적 달성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6. 농업 시설물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5]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같은 기준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이를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보조사업자와 계약한 시공업자가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안전시설 또는 공사용 자재 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농정과, 친환경농업과)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표 5] “사업별 안전관리비 부적정 집행 현황”과 같이 안전관리비 정산 서류를 검토하면서 ㈜○○건설과 ㈜○○○○건설의 경우 안전관리비 실적 보고서에 세금계산서가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 환경 설비공사 등)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의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급포함)+ 직접노무비 합계액의 2.93%~1.33%까지 적용함.

첨부되어 있지 않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구한 대로 보조금을 집행하였고, ㈜○○○○과 ㈜○○에너지의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12,985,970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

[표 5] 사업별 안전관리비 부당 집행 현황

(단위 : 원)

연도	사업명	보 조 사업자	시공 업체	부당 지급액				위법내용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5개 사업	4개소	4개소	12,985,970	235,390	5,179,415	7,571,165	
2019	○○○○○ 6차 산업화 기반구축 지원사업	○○○○○ 영농조합법인	㈜○○건설	3,494,160		2,911,800	582,360	세금계산서 미첨부
2019	벼 ○○○○시설 구축지원사업 (기계설비)	○○○○	㈜○○○○	4,351,500		870,300	3,481,200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2019	벼 ○○○○시설 구축지원사업(건축)	○○○○	㈜○○건설	3,362,870		673,370	2,689,500	세금계산서 미첨부
2019	○○○○기반구축 사업	○○○○	㈜○○ 에너지	470,790	235,390	70,620	164,780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2020	○○○○○업체 HACCP 시설 확충 지원사업	○○○○조합 법인	㈜○○○○ 건설	1,306,650		653,325	653,325	세금계산서 미첨부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무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무안군수**는

① 보조금으로 지원된 중요 시설·장비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현장 점검 시 현장 점검 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 및 현장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문서화하는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② 부당하게 집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985,97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전 라 남 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관계기관(부서) 무안군(지역개발과)

훈 계 대 상 자 무안군 ○○○○과 지방○○주사보 ○○○

내 용

1. 업무개요

무안군은 2018. 10월부터 2021. 9월까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사항 확인 및 관련 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표 1]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 행정처분 현황”과 같이 행정처분 등의 관리·감독업무를 하고 있다.

[표 1]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 행정처분 현황(2018.10월~2021.9월)

구분	등록기준 미달 등											
	통보(접수) 건수				처리 건수 / 무혐의 건수				미처리 건수			
	계	자본금	기술인력	기타	계	자본금	기술인력	기타	계	자본금	기술인력	기타
계	206	86	69	51	198/159	85/77	66/53	47/29	8	1	3	4
2018. 10.~12.	67	38	28	1	66/53	38/32	28/21		1			1
2019년	75	37	18	20	72/60	37/37	18/15	17/8	3			3
2020년	53	11	23	19	49/39	10/8	20/17	19/14	4	1	3	
2021. 09월	11			11	11/7			11/7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주사보 ○○○은 2021.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

서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감독 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협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1], 보증가능금액확인서[2] 등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3]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관련 [별표 6]에 따르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그 건설업자에게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협의업체에 대하여 실태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건설업자에게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지역개발과)은 2018. 11월부터 2020. 10월까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협의업체로 [별표 1]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현황”과 같이 2개사 4건을 통보받았는데도 2021. 9. 7. 감사일 현재까지 영업정지 처분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건설업체인 ㈜○○○○(대표자 ○○○, 포장공사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협의업체로 통보받은 2020. 10. 21. 이후 2021. 9. 7. 감사일 현재까지 [별표 2]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에 대한 무안군 발주사업 수주 명세”와 같이 무안군에서 발주한 사업을 전자 견적방법으로 1건(계약금액 23,822천원)을 수주하였

---

1)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은 업종별로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음

2)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계약보증 등(입찰보증 제외)의 보증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금융기관 등이 발급하며, 금융기관 등은 건설사업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5~60%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받고 있음

3)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별표 4] 시·군 권한위임사항 : 전문건설업에 관한 사무

고, (유)○○에너지(대표자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기술인력) 협의업체로 통보받은 2020. 10. 21. 이후 2021. 9. 7. 감사일 현재까지 무안군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1건(계약금액 3,395천원)을 수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협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사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99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2018. 11. 16.부터 2019. 4. 22.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협의업체 4개소에 대하여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4]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와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

4) KISCON이라고 하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추진해온 건설산업정보망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구축된 시스템

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지역개발과)은 2018. 11월부터 2020. 10월까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로 [별표 1]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명세”와 같이 4건을 통보받았는데도 2021. 9. 7. 감사일 현재까지 후속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법의 취지를 훼손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무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무안군수**는

①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소홀이 한 지방○○주사보 ○○○을 훈계하고(**훈계**)

②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통보받은 8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 절차 등을 이행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2] 생　략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재난관리기금 집행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무안군(안전총괄과)

내　　용

1. 업무개요

무안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2005년부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표] “재난관리기금 현황”과 같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운용하고 있다.

[표] 재난관리기금 현황

(단위 : 천원)

총 적립액	2019년 이월금	2020년 적립액	2020년 도보조금	2020년 예금이자	융자회수금
3,523,942	1,302,756	1,892,110	308,985	15,779	4,312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액 사용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4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 피해기준 5배를 초과하는 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무 예치금액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5항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액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조례에서 정한 내용일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안전총괄과)은 2019. 00. 00. “지방하천 ○○천 ○○○교”가 차량통행제한(7톤 이하)을 무시하고 진입한 레미콘 차량(28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 건에 대하여 2019. 00. 00. 내부결재를 통해 재난관리기금(사용가능액)으로 교량 가설공사를 긴급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재난관리기금(사용가능액) 잔고가 부족하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한 후「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의무예치액)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인지 관련 규정과 군 조례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정기예금으로 관리중이던 재난관리기금(의무예치액) 2억원을 계약 해지하여 교량 가설공사에 180,282천원을 사용하였다.

또한 교량 붕괴에 대한 원인규명을 통해 2019. 00. 00. 레미콘차량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상액(48,190천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재예치하지 않고 군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하는 등 재난관리기금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사용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의무예치액)을 방만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관리·운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무안군은 법령 및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내용으로 주민불편 및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가설교량 설치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무안군수**는 앞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용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 라 남 도

훈계요구 및 통보(시정완료)

제 목 ○○○ ○○○○○위험 개선지구 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무안군(안전총괄과)

훈 계 대 상 자 무안군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개요

무안군은 ○○읍과 ○○면 일원의 지역을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2018년 “석회암지역 지반특성평가”를 실시하였고, 지반 붕괴의 위험이 있는 ○○읍과 ○○면 일원을 2018. 3. 19. 행정안전부로부터 “○○○ ○○○○위험 개선지구[1]”로 지정받아 2019. 6. 24.부터 ㈜○○ 외 1개사[2]와 계약(431,197천원)하고 2021. 9. 7. 감사일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주사 ○○○은 2020.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 ○○○○○위험 개선지구 사업 업무담당팀장으로 근무하였다.

2.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내역서 작성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2.예정가격의 결정방법에

1) 총사업비 : 66억원(공사비 40억원, 보상비 18억원, 경비 8억원), 사업량 : 그라우팅 보강 320공, 사업면적 : 4.89ha
2) ○○○○○정보(주) ○○○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편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대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 ○○○○○위험 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예정가격을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라 산출하고 계약심사를 통하여 원가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안전총괄과)은 "○○○ ○○○○○위험 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표 1] "○○○ ○○○○○위험 개선지구 행정안전부 승인내용과 상이한 내용 현황"과 같이 행정안전부와 별도의 협의 없이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다르게 용역사업비를 산출하여 세무회계과에 용역 계약을 의뢰하였다.

[표 1] ○○○ ○○○○○위험 개선지구 행정안전부 승인내용과 상이한 내용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승인내역	계약의뢰내역	차이점	변경사유	승인기관협의
총사업비	계	66	72	증 6		
	공사비	40	46	증 6	임의변경	미협의
	보상비	18	18	-	-	-
	경 비	8	8	-	-	-
사업계획		그라우팅 320공	그라우팅 350공	증 30공	임의변경	미협의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발주부서에서 과다 산정하여 계약 요구한 "○○○ ○○○○○위험 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심사에서 적정성을 검토한 것으로 판단하고 승인내용과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채 2019. 6. 24. ㈜○○(○○

○) 외 1개사와 계약(431,197천원) 하여 용역을 착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승인기관 사전협의 미실시 및 사업비 미확보

가. 판단기준

무안군은 2020. 6월 “○○○ ○○○○위험 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는 ㈜○○로부터 사업구역, 보강방법 및 사업비가 당초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내용과 많은 차이(공사비 40억원 → 90.59억원, 그라우팅 320공 → 760공)가 발생되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따라서 무안군은 사업비 확보 및 사업계획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승인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사업비 확보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 후 특허공법 선정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안전총괄과)은 코로나19 확산상황 등의 사유로 승인기관과 사업비 확보방안 등에 대한 별도의 협의 없이 특허공법 선정을 진행하였다.

특히 사업비와 사업량이 당초 사업 선정 시 승인금액보다 2배 이상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승인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는 당연히 해야 하였고, 사업비 확보 상황에 따라 특허공법 적용 시 예정가격과 공법선정 참여업체의 시공실적 제한 등 공법 제안서 평가 기준도 달리 적용되므로 승인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수사항이었으나 이를 간과하였다.

그로 인하여 사업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 용역사가 제시한 추정공사비 90.59억원(부가세 포함)으로 2020. 7월 특허공법 기술제안을 입찰 공고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4. 특허공법 선정 공고문 작성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신기술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에 따르면 발주(사업)부서는 특허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반영 전에 해당 특허 등의 필요성과 유사기술에 대한 가격 및 성능 등을 검토한 비교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신기술 등의 난이도나 사용비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특허·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발주 또는 사업부서)은 기본설계·실시설계 완료 전에 특허권자(전용 실시권자 포함) 및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무안군은 "○○○ ○○○○○위험 개선지구" 지반보강에 대하여 난이도나 사용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라우팅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을 검토하고, 2020. 00. 00. 실시설계 공동보강 공법선정 추진계획에 관한 내부 방침을 결정하여 공법 선정절차를 이행하였고, 2020. 00. 00. "○○○ ○○○○○위험 개선지구 지반보강공사 신기술·특허공법 기술제안"에 총사업비 66억원(부가세 포함)으로 1차 정량평가 실시 후 상위 5개사에 대하여 2차 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내부방침을 결정하였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안전총괄과)은 2020. 00. 00. "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 공모 시행 공고계획"을 승인기관의 협의와 변경사유도 명시하지 않은 채 당초 결정된 방침과 다르게 [표 2] "공법 선정 방침과 공고문 내용 차이 현황"과 같이 공법선정심의회 상정기준이던 정량평가 상위 5개사에 대한 2차 평가계획 등을 공고문에 포함하지 않은 채 공고하였고, 공사비 예정가격 등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공법 제안서를 제출한 10개 회사 전체 공법을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산업㈜와 ㈜○○○○○ 2개 공법 제안회사는 공고문에 제시된 총공사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부적격으로 처리

하지 않고 공법선정 심의위원회에서 2차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83.3억원, 제경비 별도)이 적격자로 선정되게 되었다.

[표 2] 공법 선정 방침과 공고문 내용 차이 현황

구분	공법선정 방침 (1차, 2020. 00월)	공법선정 방침(공고계획) (2차, 2020. 00월)	공 고 문 (2020. 00월)
공법심의회 상정기준	1. 정량평가 상위 5개사 정성평가 2. 정성평가 70점	1. 평가기준 삭제 2. 정성평가 70점	1. 미기재 2. 정성평가 70점
공사비	총사업비 66억원 (공사비 40, 보상비18, 경비 8)	추정공사비 90.59억원 (공사비 변경사유 및 계획 미포함)	추정공사비 90.59억원 (부가세포함)
문제점	1. 공사비 40억원 (토목 및 기반시설, 특허공법 등) 2. 특허공사비 기준 미제시	1. 예산 미확보 (공사비 50.59억원 추가 소요) 2. 특허공사비 기준 미제시	1. 예산 미확보 (공사비 50.59억원 추가 소요) 2. 특허공사비 기준 미제시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당초 승인받은 계획대로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총공사비를 초과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여 부적격 처리되어야 할 ㈜성우지오텍이 적격자로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특허공법 제안서 평가 부적정

가. 판단기준

무안군은 “○○○ ○○○○○위험 개선지구 지반보강공사 신기술·특허공법 기술제안” 공고 시 제안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을 공개하였고,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평가 시 감점으로 정하는 1. 제안서 매수 기준, 2. 회사와 공법명 표기금지, 3. 시공실적 지명 표기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였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안전총괄과)은 “○○○ ○○○○○위험 개선지구 지반보강공사 신기술·특허공법 기술제안” 선정 과정에서 ㈜○○○○○○의 경우 제안서에 83.3억원(제경비 별도)을 제시하여 제경비 포함 시 약 116.6억원으로 총사업비를 초과하였고, 제안서에 약칭으로 특허공법명을 표기하고 제안서는 기준매수를 5매 초과하여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감점 처리하지 않고 평가를 완료하여 2020. 00. 00.

최종 1순위로 선정 공고하였다.

한편 2020. 00. 00. 적격자로 선정받지 못한 2순위 업체 ○○○○○㈜에서 심의회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건에 대하여 비공개 사항임을 통지하며 평가서를 자체 재검토한 결과 [표 3]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서 재검토 결과 현황”과 같이 10개사 중 9개사의 감점사항을 적용하지 않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2020. 00월 1순위 업체인 ㈜○○○○○○과 설계용역사인 ㈜○○에 설계협의 일시중지를 요구하였으며 자문변호사 법률 자문, 1순위 업체 의견조회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법적 분쟁이 예상되고 있다.

[표 3]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서 재검토 결과 현황

순위	기술제안사	평가점수			감정사항 총괄		재산정 점수	변경 순위
		정량 (30)	정성 (70)	계 (100)	감점	감점사유		
1	(주)○○○○○	00	00.0	00.0	5	총공사비 초과, 공법명 표기, 기준매수 초과	00.0	2
2	○○○○○㈜	00	00.0	00.0	-	-	00.0	1
3	○○○㈜	00	00.0	00.0	5	공법명 표기	00.0	3
4	㈜○○○○	00	00.0	00.0	5	공법명 표기	00.0	4
5	㈜○○○○	00	00.0	00.0	5	공법명 표기, 지역명 표기	00.0	5
6	○○○○㈜	00	00.0	00.0	5	공법명 표기	00.0	6
7	○○○○㈜	00	00.0	00.0	5	공법명 표기	00.0	7
8	○○○○㈜	00	00.0	00.0	5	공법명 표기	00.0	8
9	○○○○○○㈜	00	00.0	00.0	5	회사명 표기	00.0	9
10	㈜○○○○○	00	00.0	00.0	5	공법명 표기	00.0	10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붕괴위험 지역을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시행할 목적의 ○○○ ○○○○위험 개선지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어 사업이 정상화 될 때까지 주민들의 불안한 생활이 장기간 지속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무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무안군수**는

① ○○○ ○○○○○위험 개선지구 설계용역 및 특허공법 선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담당 공무원 지방○○주사 ○○○을 훈계하고**(훈계)**

② ○○○ ○○○○○위험 개선지구 사업을 당초 적격자로 선정한 ㈜○○○○○○에서 적격자로 선정받지 못한 2순위 업체 ○○○○○○㈜와 2021. 00. 00. 신기술·특허 사용을 협약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나, 앞으로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통보완료)]**

전 라 남 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연안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무안군(해양수산과)

훈 계 대 상 자 무안군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개요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20조의9에 따라 침식 방지 및 침식해안 복구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관리구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매 10년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연안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2019년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통해 2020. 00. 00. 연안정비사업 대상지로 무안군 ○○, ○○지구 등 13개 연안정비사업 대상지를 확정·고시하고 무안군수를 연안정비사업 시행자로서 지정하여 현재 ○○, ○○지구 등 6개 지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주사 ○○○은 2020.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연안관리사업 업무담당팀장으로 근무하였다.

2. 연안관리사업 변경승인 절차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연안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연안정비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승인(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해안의 생태적 특성, 환경적 가치, 해안경관이나 재해예방 등을 고려하여 자연해안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자연해안의 관리에 관한 자연해안 관리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연안정비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지 등을 변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여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해양수산과)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 지구 등 6건의 연안정비사업을 특별한 사유없이 [표 1] “연안정비사업 설계변경 승인절차 미이행 현황”과 같이 당초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지역이 아닌 자연바닷가에 인공구조물 설치 및 선착장 정비를 시행하였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변경협의를 하지 않고 연안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1] 연안정비사업 설계변경 승인절차 미이행 현황

(단위: 천원)

지구명 (연안정비사업)	사업기간	공사비		승인 여부	미승인 사업내역	미승인 사업비
		당초	변경			
계	6건	12,039,691	9,910,057			1,269,701
○○-○○ 지구	2019.00.00.~ 2021.00.00.	1,152,749	1,185,591	×	호안 110m 연장시공 콘크리트포장 시공위치 변경 도리포 선착장 정비	32,842

지구명 (연안정비사업)	사업기간	공사비		승인 여부	미승인 사업내역	미승인 사업비
		당초	변경			
○○지구	2020.00.00.~ 2022.00.00.	2,499,367	-	×	-	-
○○지구	2020.00.00.~ 2022.00.00.	2,170,655	2,667,328	진행	호안 70m 연장 시공 어장진입로 확장 30m 모래톱 설치 20m	변경승인 협의중
○○지구	2019.00.00.~ 2021.00.00.	3,018,124	3,539,998	×	호안 241m 연장 시공 포장 시공위치 변경	521,874
○○지구	2019.00.00.~ 2021.00.00.	1,802,155	2,517,140	×	호안 430m 연장 시공 포장 시공위치 변경	714,985
○○지구	2020.00.00.~ 2022.00.00.	1,396,641	-	×	-	-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자연해안은 생태적 특성, 환경적 가치, 해안경관이나 재해예방 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는데도 당초 법령에서 정한대로 관리되지 못하였고 사업 예산이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연안정비사업 공사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 이라 한다) 제3장 계약심사 운용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 할 경우에는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점용·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1]을 변경하려는 경우

1) 점용・사용허가 기간의 연장, 점용・사용의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

에는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변경 내용을 협의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설계서가 현장과 불부합 할 경우에는 미리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해양수산과)은 2018. 10월부터 2021. 8월까지 시행한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표 2] "연안정비사업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내역 미회수 현황"과 같이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기관과 공유수면 점·사용,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변경협의를 득하지 않았고, 시공사들이 피복석 및 사석투하, 비계설치 등의 공사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였는데도 설계변경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 연안정비사업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내역 미회수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사명 (연안정비사업)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공 사 비	지적내용	지적 금액	조치 내용
계	4건					31,963	
1	○○-○○지구	2019.00.00. ~2021.00.00.	○○○○건설(주)	1,185,591	피복석 및 사석 투하방법 변경 등	2,909	회수
2	○○지구	2020.00.00. ~2022.00.00.	○○○○건설(주)	2,667,328	골재투하 방법 변경 사용장비 변경 등	10,695	감액
3	○○지구	2019.00.00. ~2021.00.00.	○○○○○건설 (주)	3,539,998	피복석 및 사석 투하방법 변경시공	7,933	회수
4	○○지구	2019.00.00. ~2021.00.00.	○○○○건설(주)	2,517,140	피복석 및 사석 투하품 과다계상	10,426	회수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변경내용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지 않았고,「계약 집행기준」등에 따라 예산 절감방안을 검토를 소홀히 하여 31,963천원(제경비 포함)의 사업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무안군은 주민요구와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고 앞으로 사업추진 시 해당 법률과 규정 등에 대한 세심한 업무연찬으로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관련 공무원이 2018년 무안군 정기종합감사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지적된 사실이 있는 등 관행적으로 업무처리를 지속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무안군수**는

① 연안정비사업을 승인기관과 협의·승인도 없이 당초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시공사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였으나 사업비를 감액·회수하지 않은 당시 연안정비사업 업무담당팀장 지방○○주사 ○○○을 훈계하고(**훈계**)

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다 지급된 31,963,000원을 감액·회수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 라 남 도

훈 계 요 구

제　　목 공공건축물 건축기획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무안군(건설교통과)

훈 계 대 상 자 무안군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개요

무안군은 2020. 11. 9. 계약을 체결하여 ○○○○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다.

지방○○주사 ○○○는 2020.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낙지골목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업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및 제2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건축사업은 [표 1] “공공건축 조성사업 사전 행정절차”와 같이 설계비 추정 가격 기준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를 받고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공모하여 용역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공공건축 조성사업 사전 행정절차

설계비 추정 가격	건축기획 업무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
5천만원 미만	필수	×	선택	선택
5천만원 ~ 1억원 미만	필수	×	필수	선택
1억원 이상	필수	필수	필수	의무 (우선적용)

자료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자료집 발췌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공모방식 우선 적용 대상 외[2]의 설계를 발주하더라도 설계비 추정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등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정한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고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정 가격이 1억원 이상에 해당 되어 사전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무안군이 정한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의뢰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건설교통과)은 2020. 10. 6. [표 2] “공공건축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계약 현황”과 같이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의뢰하면서 필수적인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또한 실시하지 않은 채 세무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하였다.

[표 2] 공공건축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계약 현황

(단위: 천원)

용 역 명	발주 부서	추정 가격 (계약금액)	계약일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기획 업무	사전 검토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
○○○○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 교통과	139,511 (122,686)	2020.11.09.	부	부	부	우선적용 대상 외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적용 대상 외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또한 세무회계과는 사업부서로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의뢰 받아 계약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공공건축물의 합리적인 조성과 관리로 투입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무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무안군수**는 공공건축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의뢰한 지방○○주사 ○○○를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무안군(무안생태갯벌사업소, 지역개발과, 세무회계과)

내　　용

1. 업무개요

무안군은 2018. 10. 1.부터 2020. 12. 20.까지 무안군 ○○○○○○○관 건립공사'[1] 및 ○○ ○○○○○ 체험관 신축공사[2]를 추진하여 준공하였고. 2020. 12. 22.부터 2021. 9. 7. 감사일 현재까지 청계면사무소 신축공사[3]를 추진하고 있다.

2. 무안군 ○○○○○○○○관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가. 품질시험계획 미 수립 등 품질시험계획 승인 업무 부적정

(1)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미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결과(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

1) 건축규모 : 대지면적 - 17,278㎡, 연면적 - 1,091.86㎡(지상2층), 용도 - 문화및집회시설, 사업비 - 1,925백만원
2) 건축규모 : 대지면적 - 1,214㎡, 연면적 - 385.59㎡(지상2층),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업비 - 873백만원
3) 건축규모 : 대지면적 - 4,208㎡, 연면적 - 1,372.14㎡(지상2층), 용도 - 공공청사, 사업비 - 2,624백만원

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별표 5]에 따르면 초급 품질관리 대상 건설공사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규모 20㎡ 이상의 시험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무안군 ○○○○○○○관 건립공사는 건축물 연면적 1,091.86㎡의 건축공사로서 품질시험을 위한 20㎡ 이상의 시험실을 갖추고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공사에 해당 된다.

따라서 무안군은 ○○○○○○○관 건립공사 착공 전에 시공사로부터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했고, 품질시험실 설치 여부 또한 확인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무안생태갯벌사업소)은 2018. 00. 00. ㈜○○○○○건설(대표 ○○○)이 착공계 제출 시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도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4]인지,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5]인지 구분하지 못하여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를 검토·확인도 하지 않았고 승인 통보도 하지 않았다.

또한 시공사가 무안군으로부터 품질시험계획의 승인 통보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장에 품질시험실을 설치하지 않고 품질시험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주요 자재의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공사를 준공처리 하였다.

그로 인하여 ○○관 건립공사에 사용된 주요 자재의 품질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 건축물 품질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부적격 품질관리 기술인 배치 및 품질시험 추진 부적정

---

4) 품질관리계획 수립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품질시험계획 수립 :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건축물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공사, 공사비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1)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및 제55조에 따르면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에는 초급 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교육(기본교육 35시간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는 등 자격을 갖춘 적격한 기술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건설(대표 ○○○)은 착공계 제출 시 기본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부적격한 기술자를 품질관리 기술인으로 배치하는 계획서를 무안군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무안군은 ㈜○○○○○○건설이 착공계 제출 시 제출한 기본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부적격한 품질관리 기술인에 대해서는 교체 요구를 하여야 했고, 자격을 갖춘 적격한 기술인이 현장에 상주하며 품질시험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물로 작성·보관하는지 확인하는 등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무안생태갯벌사업소)은 2018. 00. 00. 부적격한 품질관리 기술인을 교체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았고, 품질관리 기술인이 현장에 상주하며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시험결과를 기록물로 작성·보관 및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업을 준공처리하였다.

그로 인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를 태만히 하여 해상안전 ○○관 건축물의 품질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1)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고용노동부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건설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6]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은 이를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르면 준공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 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무안생태갯벌사업소)은 2018. 11월부터 2020. 12월까지 [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현황”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현장정리 인건비, 공사용 사다리 설치 등으로 2,296천원을 집행하였는데도 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 환경 설비공사 등)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1~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의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 합계액의 2.93%~1.86%까지 적용함

[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현황(2018.11월~2020.12월)

(단위 : 원)

구분	집행금액(a)	인정금액(b)	목적 외 사용금액 (a-b)
계	43,610,176	41,314,000	2,296,176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12,414,000	11,250,000	1,164,000
안전시설비 등	16,165,000	15,486,610	678,390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013,240	4,013,240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2,400,000	2,400,000	
제 비 율	8,617,936	8,164,150	453,786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3. ○○ ○○○○○ 체험관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16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한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또는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시공 상태가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와 일치하는지 검사하게 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지역개발과)은 2021. 9. 7. 감사일 현재 [표 2] “사업 미시공·시공소홀 부분 등에 대한 미회수 현황”과 같이 현장 확인 및 검사를 소홀히 하여 가설울타리를 설계 내역보다 적게 설치하고,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 공사를 미시공하여 5,227천원을 회수하여야 했는데도 회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준공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였다.

[표 2] 사업 미시공·시공소홀 부분 등에 대한 미회수 현황

(단위 : 원)

구 분	당 초		변 경		회수 대상 금액 (a-b)
	수량	공사비(a)	수량	공사비(b)	
계		13,193,349		7,965,856	5,227,493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130m	3,189,290	115m	2,698,630	490,660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	239㎥	3,239,167	0㎥	0	3,239,167
제 비 율		6,764,892		5,267,226	1,497,666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준공검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미시공 및 시공소홀 부분 등에 대한 시정조치 없이 준공되어 부실시공 예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사무소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

가. 설계변경 업무 추진 부적정

1)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16조,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사무소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 현장의 지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시공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현장에 적합한 공법 등으로 설계변경하여 시공하도록 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세무회계과)은 2021. 4. 16. 당초 설계에 없던 지반개량 공사를 설계변경하여 공사비에 반영하면서 지반개량공사 시공업체가 자사에서 시공 가능한 공법이 우수한 공법으로 검토한 비교 검토서와 견적서를 제출하자 다른 유사한 공법과 다른 회사의 견적 등을 비교·검토하지 않고 설계변경하여 시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공법을 시공할 수 있는 업체들의 시공 참여 기회를 잃게 하였고, 비교 견적을 받아 공사금액을 산정하였다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었는데도 그리하지 않아 공사비를 절감할 기회를 잃게 하였다.

나. 품질시험계획 미 수립 등 품질시험계획 승인 업무 부적정

1)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미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결과(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사무소 신축공사는 건축물 연면적 1,372.14㎡의 건축공사로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축공사에 해당 된다.

따라서 무안군은 ○○○사무소 신축공사 착수 전 시공사로부터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세무회계과)은 2020. 12. 29. ㈜○○○○(대표 ○○○)이 착공계 제출 시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도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7]인지,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8]인지 구분하지 못하여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를 검토·확인도 하지 않고 승인 통보도 하지 않았다.

또한 시공사가 무안군으로부터 품질시험계획의 승인 통보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착공하였는데도 2021. 9. 7.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로 인하여 ○○○사무소 신축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의 품질시험 실시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어 건축공사 전반의 품질이 의심받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부적격 품질관리 기술인 배치 및 품질시험 추진 부적정

1) 관계법령(판단기준)

7) 품질관리계획 수립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8) 품질시험계획 수립 :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건축물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공사, 공사비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및 제55조에 따르면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에는 초급 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교육(기본교육 35시간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는 등 자격을 갖춘 적격한 기술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대표 ○○○)은 착공계 제출 시 기본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부적격한 기술자를 품질관리 기술인으로 배치하는 계획서를 무안군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무안군은 ㈜○○○○○이 착공계 제출 시 제출한 기본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부적격한 품질관리 기술인에 대해서는 교체 요구를 하여야 했고, 자격을 갖춘 적격한 기술인이 현장에 상주하며 품질시험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물로 작성·보관하는지 확인하는 등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세무회계과)은 2020. 00. 00. 부적격 품질관리 기술인에 대한 교체 요구도 하지 않고 있었고,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물로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무안군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를 태만히 하여 청계면사무소 신축 건축물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무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무안군수**는 무안군 ○○○○○○○관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목적 외로 사용한 산업안전관리비 2,296,176원을 회수하고, ○○ ○○○○○ 체험관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과다 집행된 5,227,493원을 회수하며, ○○○사무소 신축공사 현장에는 적격한 품질관리자가 배치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 라 남 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무안군(건축과)

훈 계 대 상 자 무안군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개요

무안군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2018년 11월부터 2021. 9. 7. 감사일 현재까지 단독주택 부지 조성 등 948건의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주사 ○○○는 2019.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개발행위 허가 업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개발행위 허가 관련 지역개발공채 매입 확인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도 및 시·군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도 및 시·군에 신고·등록을 신청한 자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고, 시·군에서는 인·허가증의 교부 시 매입 의무자의 공채매입 사실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개발행위허가 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매입 의무자의 공채매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건축과)은 2019. 00. 00. ○○면 ○리 000번지에 주차장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지역개발공채 305천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했는데도 [별표 1] “개발행위 허가 관련 지역개발 공채 매입 대상 중 미 매입 명세”와 같이 총 4건 3,950천원의 매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를 하였다.

3.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허가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사업 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허가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간 내에 연장이 되도록 미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건축과)은 2018. 00. 00. ○○면 ○○리 산00 외 1필지에 동·식물관련시설 신축 부지조성 목적으로 허가 한 개발행위 허가기간(2020. 00. 00.)이 2021. 9. 7. 감사일 현재까지 243일 지나도록 의견 청취,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별표 2] “개발행위 허가기간 경과 명세”와 같이 총 31건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짧게는 17일에서 길게는 399일이 경과 되었는데도 의견 청취 및 허가 취소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4. 개발행위허가 관련 이행보증금 예치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0조, 제133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59조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행보증금 보증기한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보증기한을 연장하도록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건축과)은 2019. 00. 00. ○○면 ○○리 000번지에 액비 저장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예치한 이행보증금 3,546천원에 대한 보증증권의 보증기한이 2020. 00. 00.에 만료되어 2021. 9. 7. 감사일 현재까지 413일이 경과 되었는데도 보증기한을 연장하도록 하지 않는 등 [별표 3] “개발행위 허가 관련 이행보증증권 보증기간 경과 명세”와 같이 총 17건의 이행보증증권 211,198천원의 보증기한이 짧게는 67일, 길게는 457일이 경과되었는데도 이를 연장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하는 조례의 기본 취지 및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무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무안군수**는

①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무담당자 지방○○주사 ○○○를 훈계하고(**훈계**)

② 지역개발공채 매입 가능한 1건 25,000원은 매입하도록 조치하고, 허가 기간 경과된 31건에 대해서는 허가 기간 연장 또는 취소 등 행정 조치하며, 보증기한 경과된 17건에 대해서는 보증기한을 연장하여 재예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표 1] ~ [별표 3] 생 략

전 라 남 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무안군(민원지적과, 건축과)

훈 계 대 상 자 무안군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개요

무안군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8년 11월부터 2021. 9. 7. 감사일 현재까지 73건의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규모의 개발행위 허가를 하였다.

지방○○주사 ○○○은 2019.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업무 관련 회의 참석 및 공문을 접수 처리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1항 및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토지 5천㎡(연간 1만㎡)이상 또는 건축물 연면적 3천㎡(연간 5천㎡, 주택[1] 제외)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2]

---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는 제외

2)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개발행위에 대한 최초 허가를 받기 전에 하여야 하며, 허가 당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허가에 기초하여 조성된 부동산 등은 타인에게 공급할 수 없음(법제처 유권해석 14-0051, 2014. 5. 9.)

그리고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 기준」(2018. 3.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허가권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되는 인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3]에 대하여는 공급 외 목적(직접사용)으로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 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허가 관련 서류 사본과 함께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인허가권자는 공급 외 목적(직접사용)으로 허가 등을 받고 허가 변경(사업주체 변경 포함) 또는 타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시·도지사에게 관련 증거자료를 통보하는 등 사후관리[4]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전라남도지사(토지관리과)는 부동산개발업의 무등록으로 인한 개발업자의 처벌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 기준」을 22개 시·군 민원부서[5]에 시달하고 업무연찬 교육[6]도 실시하였다.

따라서 무안군은 개발행위의 허가(변경 포함) 등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라 등록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신고서 및 개발업 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등록사실을 확인하여야 했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 해당되나 개발업을 등록하지 않고 공급 외 목적(직접사용)을 이유로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자에게 허가 이후 인·허가 명의변경 등 일체의 공급행위가 제한됨을 반드시 안내하는 등 행정지도를 하여야 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와 동시에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확인서 및 인허가 관련 서류 사본을 인허가 등을 받은 토지 등 소재지 및 인허가 신청자의 영업소

---

3) 신청인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마친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신고서'를 제출 받아야 함

4) 구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기준」(2009년 12월. 구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에는 시・도지사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인허가권자의 협조 의무에 대하여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2015. 6. 15. 위 기준을 개정하여 인허가권자가 관련 증거자료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시・도지사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사후관리 할 수 있게 협조하도록 명시하였으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기준」(2018년 3월)에서도 동일하게 명시

5)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인허가 업무 부서로 시달 : 토지관리과-0000(2019. 00. 00.)호, -0000(2018. 00. 00.)호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민원지적과)은 전라남도(토지관리과)로부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 기준과 토지행정 추진계획 시달회의 등을 통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도록 업무협조 요청 등을 수차례 받고서도 전라남도 토지관리과 - 0000(2019. 00. 00.)호 공문에 대해서만 개발행위허가 담당자 1인에게 공람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

그로 인하여 건축과 개발행위허가 담당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유)○○에게 ○○면 ○○리 000번지 6,600㎡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유)○○이 2021. 00. 00.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등 [표] "부동산개발업 미등록자의 부동산 매각 현황"과 같이 부동산개발업 미등록자가 개발행위 허가 이후 타인에게 매각한 사례가 5건이 발생하였는데도 관련 자료를 전라남도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

[표] 부동산개발업 미등록자의 부동산 매각 현황

(단위 : ㎡)

연번	부동산개발(개발행위) 허가 현황					매각 내역		
	위치	개발내용	면적	신청인	허가일	등기상 소유자	매각일	면적
계	5건							
1	○○면 ○○리 000	태양광 발전시설	6,600	(유)○○	2020.00.00.	○○○	2021.00.00.	6,600
2	○○면 ○○리 00 외 4필지	태양광 발전시설	5,926	㈜○○ ○○○	2020.00.00.	농업회사법인㈜ ○○○○	2020.00.00.	5,981
3	○○읍 ○○리 000 외 1필지	동·식물 관련시설	7,450	농업회사 법인 (유)○○	2019.00.00.	○○○○○ 영농조합법인	2020.00.00.	7,450
4	○○면 ○○리 000 외 2필지	단독주택	6,962	○○○	2020.00.00.	(유)○○○○	2021.00.00.	6,962
5	○○읍 ○○리 000	동·식물 관련시설	6,827	○○○	2021.00.00.	○○○	2021.00.00.	6,827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부동산개발업을 관리·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무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무안군수**는

①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실 확인 업무를 개발행위 허가 담당자에게 공유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업무담당공무원 지방○○주사 ○○○을 훈계하고 **(훈계)**

② 부동산개발업법을 위반한 5건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전라남도(토지관리과)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 라 남 도

훈 계 요 구

제 목 무안 ○○길 ○○○○공원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무안군(관광과, 세무회계과)

훈 계 대 상 자 무안군 ○○○○과 지방○○주사 ○○○

무안군 ○○과 지방○○서기보 ○○○

내 용

1. 업무개요

무안군은 2018. 00. 00. ○○○○건설㈜(대표 ○○○)와 무안 ○○길 ○○○○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134백만원에 계약하고 2018. 00. 00. 완료하고, 2019. 00. 00. ○○건설㈜(대표 ○○○)와 무안 ○○길 ○○○○공원 조성공사를 3,305백만원에 계약[1]한 후 [표 1] "무안 ○○길 ○○○○공원 조성공사 설계변경 추진 현황"과 같이 변경계약 후 2021. 00. 00. 사업을 완료하였다.

[표 1] 무안 ○○길 ○○○○공원 조성공사 설계변경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공사기간		도 급 금 액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증감율
최종	2019.00.00.~2021.00.00.	2019.00.00.~2021.00.00.	3,305	4,023	증718	21.7
총괄(1회)	2019.00.00.~2021.00.00.	2019.00.00.~2021.00.00.	3,305	3,311	증6	0.2
총괄(2회)	2019.00.00.~2021.00.00.	2019.00.00.~2021.00.00.	3,311	3,633	증322	9.7
총괄(3회)	2019.00.00.~2021.00.00.	2019.00.00.~2021.00.00.	3,633	4,023	증390	10.7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1) 사업규모 : ○○공원(4,725㎡), ○○공원(217㎡), ○○조형물 등 3개소, 조경 식재 1식 등

지방○○주사 ○○○는 2018. 00. 00.부터 2018. 00. 00.까지 ○○과에서 무안 ○○길 ○○○○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감독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용역을 완료하였고, 지방○○서기보 ○○○은 2020. 0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무안 ○○길 ○○○○공원 조성공사 감독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사업을 준공하였다.

2. 사업장 품질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미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결과(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별표 5]에 따르면 초급 품질관리대상 건설공사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규모 20㎡ 이상의 시험실과 초급기술인 이상인 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무안 ○○길 ○○○○공원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시공사로부터 제출된 품질시험계획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승인 통보하며, 규모 20㎡ 이상의 시험실을 설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관광과)은 2019. 00. 00. ○○건설㈜로부터 제출된 품질시험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지 않았고,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업을 준공처리하였다.

그 결과 무안 ○○길 ○○○○공원 조성공사에 사용된 주요 자재의 품질시험 결과를 확인 할 수 없어 공사 품질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공사 착공전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무안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및 제8조에 따르면 공사비가 30억원 이상인 공사는 사전에 건설공사의 건설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검토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2]에 건설기술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시·군 등 공공기관[3]은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공원 등을 조성하는 공공공간[4] 조성사업 실시설계 완료 전 전라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5]에 공공디자인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총공사비 33억원의 ○○공원 등 2개 공원[6]을 조성하는 무안 ○○길 ○○○○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완료 전에 건설기술심의 및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관광과)은 건설기술심의 및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지 않고 2018. 00. 00. 공사를 착공하였다.

그로 인하여 설계도서의 시방방법, 공사기간, 물량산정 품셈 및 단가적용 공사비 산정의 적정, 공법(특허)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지 못하게 되어 공사시공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검토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2) 건설기술심의위원회 : 건설전문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

3) 공공기관 : 전라남도, 시·군,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4) 공공공간 : 다중이용시설중 여가휴게를 위한 공원, 공장, 수변산책로·탐방로

5)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 디장인전문분야 전문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

6) 공원(2개소) : ○○공원 9,926㎡, ○○○○공원 1,387㎡

4. 설계변경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및 제72조 제8항에 따르면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전라남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4조 [별표 1] 계약심사 대상기관 및 범위에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2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이 10% 이상 증가 할 경우에는 전라남도의 계약심사를 받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관광과)은 2020. 00. 00. [표 1] “무안 ○○길 ○○○○공원 조성공사 설계변경 추진 현황”과 같이 최초 계약금액 33억원 대비 21.7% 증가된 40억원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전라남도로부터 계약심사를 받지 않았고, 계약부서에서는 설계변경 계약심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무안 ○○길 ○○○○공원 조성공사’의 설계변경 증·감 금액 및 추가되는 신규 공정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생략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기회를 상실하였다.

5. 하도급관리계획 이행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르면 30억원 이상인 공사는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자의 의무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심사항목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하고, 하수급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을 포함)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에 대하여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무안군은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관리계획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수급인과 계약하지 아니하거나 하수급인 변경 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하도급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수급인과 계약하지 아니하거나 하수급인 변경 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했다.

한편 2018. 00. 00. 무안 ○○길 ○○○○공원 조성사업 적격심사[7] 시 개찰 1순위인 ㈜○○건설은 [표 2] “적격심사시 제출받은 하도급관리계획서 현황”과

7) 적격심사 서류 제출 : 무안군 재무과-00000(2018. 00. 00.)호/적격심사 결과 : 총점 95.04점을 득하여 적격처리

같이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에 대하여 ○○○○○(주)에게 하도급 할 것으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해당업체가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점수를 모두 인정받아 95점의 적격 통과 점수를 득함에 따라 2018. 12. 31.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적격심사시 제출받은 하도급관리계획서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계약금액	적격심사시 제출받은 하도급관리계획서					
		하수급예정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계약할금액	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공종	금액			
무안 ○○길 ○○○○원 조성사업	3,305,184	○○○○○(주)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873.336	725,609	26.42%	83.085%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무안군(세무회계과)은 수급인인 ㈜○○건설로부터 2018년 00월경[8]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요청 문서를 접수 받았으나, 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자 변경 요청 시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자를 선정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여 이에 대한 승인 통보 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수급인인 ㈜○○건설이 2019. 00. 00. 발주기관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표 3] “발주기관 승인없이 체결한 하도급 현황”과 같이 (주)○○건설 외 1개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 3] 발주기관 승인없이 체결한 하도급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계약금액	발주기관 승인 없이 체결한 하도급 내역					
		하수급예정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하도급 비율	하수급금액 비율
			공종	금액			
무안 ○○길 ○○○○공원 조성사업	3,305,184	(주)○○건설	조경식재 공사업	484,000	407,000	26.43%	84.36%
		(주)○○건설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389,400	303,000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8) 문서등록대장 미등재로 정확한 날짜 확인 불가

그로 인하여 ㈜○○건설이 「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지 않아 하도급계약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무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무안군수**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실시설계용역 및 조성공사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지방○○주사 ○○○ 및 지방○○서기보 ○○○을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